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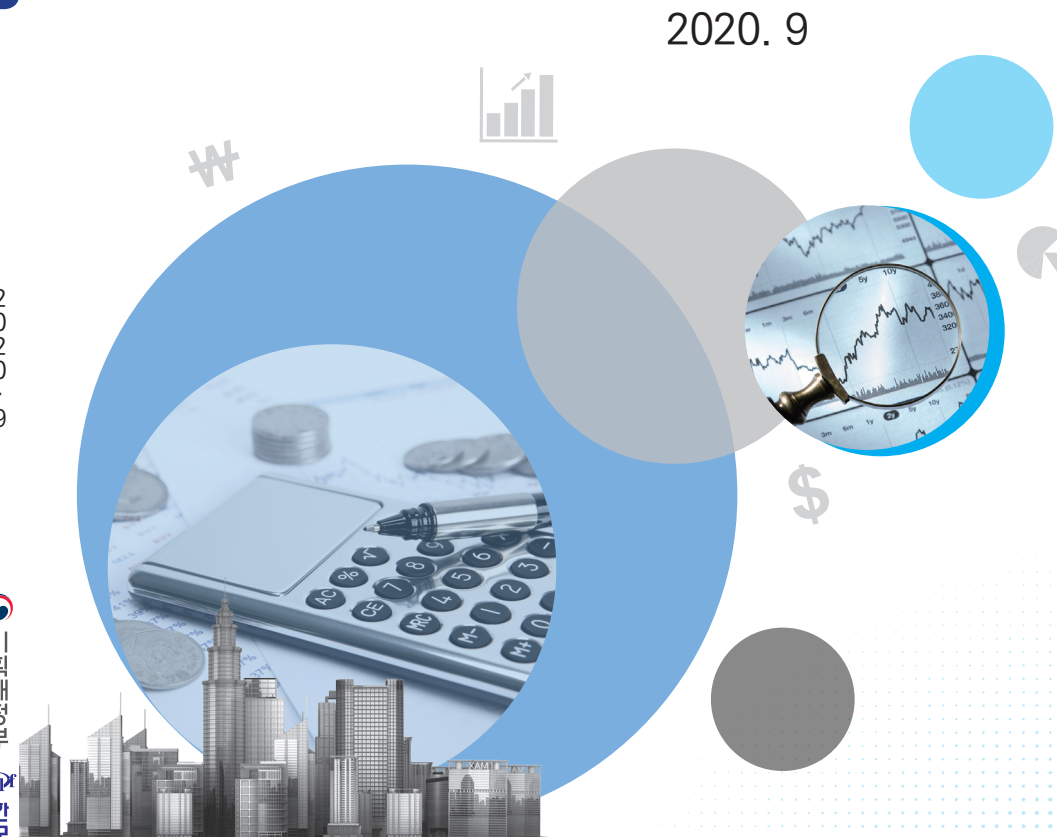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0.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0.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 요 약

## 1. 연구개요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1년도에 신설된 후 성과평가 없이 장기간 운영되었으며, 감면액 규모가 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 규모) 2012년에는 502억원 수준이었으며, 2018년에는 1,160억원에 달함
  - (도입 목적)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절감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도 개요 및 현황) 제도의 개요, 변천과정, 해외사례를 살펴봄
  - (타당성 분석) 정책목적의 적절성, 정부 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 및 제도 운영의 적절성,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효과성 분석) 동 제도가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절감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2006~2018년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세부담 및 성실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과세자료) 분석자료는 해당 기간 개인사업자 자료 전수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으로 과세기간, 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부담세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등의 납세 관련 정보가 포함됨
  - (세부담 경감 효과) 납세자의 세부담에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액공제금액 분포 등을 살펴봄
  - (성실신고 유도 효과) 동 제도가 도입 및 확장된 시기 전후로 수혜 집단과 그와 유사한 비수혜 집단의 납세행태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 등을 이용함)

## 2. 제도 개요 및 현황

- 본 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아야 함
  - 이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내용을 확인 받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②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말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133조 제1항에서 규정함<sup>2)</sup>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를 의미
    -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sup>3)</sup>
      - ①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② (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③ (업종)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1)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대상자가 같아서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기가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공제한도 변경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대조군을 이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2)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음.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7.5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5억원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공제세액의 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임
  
- 2011년 본 제도가 신설된 이후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2,046억원으로 예상됨
  - 소득세 공제규모는 2012년 503억원에서 2015년 1,0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2020년 1,9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법인세 공제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규모는 2020년 기준 48억원 수준으로 예상됨

<표 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망)	'20년 (전망)
소득세	신설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898	1,998
법인세	-	-	-	-	-	-	-	0	46	48
합계	0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944	2,04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3. 타당성 분석

- (목적의 적절성) 동 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할 경우 세수 확대 및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신뢰 형성 등의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정부 개입의 근거) 정부 개입의 근거는 텍스 갭(tax gap)의 존재와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인한 조세저항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상당한 수준의 tax gap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안종석·강성훈·오종현 2017), 이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
  - 과세당국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현재 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부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유예기간 이후에도 이전의 수입금액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유사 개인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기간까지 계속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제도 운영의 적절성)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불성실신고가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비례하는 만큼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유사 제도 간 중복) 명시적인 조세특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하게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성실사업자 우대제도가 있음<sup>4)</sup>
- 특히 소규모 성실사업자<sup>5)</sup>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4) 「소득세법」에 규정된 성실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 대신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함

5)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복식부기를 기록·관리하고, 수입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조세법 처벌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성실사업자

#### 4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우대제도 역시 성실신고 확대라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확인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 세액공제제도와는 그 성격이 달라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4. 효과성 분석

-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음<sup>6)</sup>
  - 하나는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 다른 하나는 동 제도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신고소득률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에서는 기존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던 사업자들이 동 제도의 공제한도 확대 이후 신고내용을 확인하는지를 살펴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동 세액공제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100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고 산출세액에서 약 7% 정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과세당국은 동 세액공제 외에도 성실신고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인비용 순수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도입시점과 두 번의 개정시점에 따라 신규 수혜자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수혜자들의 신고소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
    - 특히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신고소득률이 12% 정도 증가함
    - 다만, 이러한 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결합 효과를 보여줌<sup>7)</sup>

6)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7) 두 제도의 적용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기가 어려움

-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조세지출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 및 2차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조세지출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평균치를 이용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 분석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2017년 개정에서 공제한도가 확대된 것을 활용함
  - 공제한도 개편 직전연도에 정책대상자이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는 1,536명임. 이 중 38.6%인 593명의 사업자가 공제한도 개편 직후연도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함
  - 다만, 이 분석에서는 적절한 대조군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정된 효과를 공제한도 확대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목 차

I. 서론	13
II. 제도 개요 및 현황	17
1. 제도 개요	19
가. 도입 의의 및 목적	19
나. 정책대상자	20
다. 수혜내용	20
2. 제도의 변천과정	22
3. 해외 사례	24
가.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24
나.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Compliance Assurance Process: CAP)	27
다.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Annual Compliance Arrangement: ACA)	29
라. 네덜란드의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	33
III. 타당성 분석	35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37
가. 정부개입의 적절성	37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39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41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41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48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49
가. 제도 운영의 적절성	49
나.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53

IV. 효과성 분석 .....	55
1. 효과성 분석의 목적 및 내용 .....	57
2. 효과성 분석 방법 및 자료 .....	59
가. 효과성 분석방법론 .....	59
나. 효과성 분석 자료 .....	63
3. 효과성 분석 결과 .....	71
가. 세액공제의 세부담 경감 효과 .....	71
나. 신고소득률의 변화 여부 .....	73
다. 공제범위 변경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의무자들의 행태 변화 여부 .....	83
4. 요약 및 시사점 .....	84
V. 결론 .....	87
참고문헌 .....	90
부 록 .....	93

##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	21
<표 II-2> 성실신고확인신고자 규모 및 추이 .....	21
<표 II-3> 연도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2
<표 II-4> 주요 연혁 .....	23
<표 II-5>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변천 .....	23
<표 III-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기준 .....	40
<표 III-2>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의 기재사항(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4
<표 III-3>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의 기재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	46
<표 IV-1> 사업자 납세정보에 대한 미시자료의 연도별 분포 .....	64
<표 IV-2> 이중차분법에서 대조군으로 활용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기준 .....	65
<표 IV-3> 전체 미시자료의 요약 기초통계량(관측치: 85만 4,295개) .....	66
<표 IV-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수혜 여부에 따른 연도별 평균 신고소득률 ..	67
<표 IV-5> 신고소득률 기초통계량 .....	68
<표 IV-6> 총수입금액 기초통계량 .....	68
<표 IV-7> 총수입금액별 신고소득률 평균 .....	69
<표 IV-8> 신고소득률의 분포 .....	70
<표 IV-9> 경감비율 기초통계량 .....	72
<표 IV-10> 경감비율의 분포 .....	72
<표 IV-11> 제도 도입에 의한 신고소득률 변화 추정 결과 .....	77
<표 IV-12> 제도대상 기준 1차 개정에 의한 신고소득률 변화 추정 결과 .....	78
<표 IV-13> 제도대상 기준 2차 개정에 의한 신고소득률 변화 추정 결과 .....	78
<표 IV-14>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간 정책 효과 추정계수 값 비교 .....	79
<표 IV-15> 강건성 확인 결과 비교 .....	83

## 그림 목 차

[그림 II-1] risk differentiation framework(RDF) 분류 .....	31
[그림 IV-1] 총수입금액별 신고소득률 평균 .....	70
[그림 IV-2] 신고소득률 추세 .....	74
[그림 IV-3] 시기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신고소득률 추세 .....	77
[그림 IV-4] 제도 도입 후(2011~2013) 업종별 총수입금액 분포 .....	82
[부도 1] 업종별 신고소득률 분포 .....	95
[부도 2] 신고소득률 추세(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96
[부도 3] 신고소득률 추세(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97
[부도 4] 신고소득률 추세(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98
[부도 5]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제도 도입 전 총수입금액 분포 .....	99
[부도 6]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2011~2013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0
[부도 7]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2014~2017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1
[부도 8]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2
[부도 9]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제도 도입 전 총수입금액 분포 .....	103
[부도 10]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2011~2013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4
[부도 11]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2014~2017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5

[부도 12]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6
[부도 13]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제도 도입 전 총수입금액 분포 ..	107
[부도 14]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2011~2013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8
[부도 15]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2014~2017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	109



# I. 서론





## I. 서론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1년도에 신설된 후 성과평가 없이 장기간 운영되었으며, 감면액 규모가 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 규모) 2012년에는 502억원 수준이었으며, 2018년에는 1,160억원에 달함
  - (도입 목적)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절감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관해 국내 선행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분석자료 및 방법론 면에서 한계가 있음
    - 선행 연구는 과세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한 자료 대신 사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조군 설정 없이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타당성 분석) 정책목적의 적절성, 정부 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 및 제도 운영의 적절성,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문헌연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동 제도가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효과성 분석) 동 제도가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절감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2006~2018년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세부담 및 성실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 (분석자료) 해당 기간 개인사업자 자료 전수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으로 과세기간, 각종 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부담세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등의 납세 관련 정보가 포함됨

- (세부담 경감 효과) 납세자의 세부담에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액 공제금액 분포를 살펴봄
  - (성실신고 유도 효과) 동 제도가 도입 및 확장된 시기 전후로 수혜 집단과 그와 유사한 비수혜 집단의 납세행태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 등을 이용함<sup>8)</sup>
-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의 개요, 변천과정,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앞에서 설명한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며,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함

---

8)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대상자가 같아서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기가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공제한도 변경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대조군을 이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 II. 제도 개요 및 현황

### 1. 제도 개요

#### 가. 도입 의의 및 목적

- 본 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아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 이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내용을 확인 받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부담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함

## 나. 정책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②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말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133조 제1항에서 규정함<sup>9)</sup>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를 의미
    -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sup>10)</sup>
      - ①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② (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③ (업종)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다. 수혜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공제세액의 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임

9)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음.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7.5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5억원임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규정

- 2011년 본 제도가 신설된 이후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2,046억원으로 예상됨
  - 소득세 공제 규모는 2012년 503억원에서 2015년 1,0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2020년 1,9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법인세 공제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규모는 2020년 기준 48억원 수준으로 예상됨

<표 II -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망)	'20년 (전망)
소득세	신설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898	1,998
법인세	-	-	-	-	-	-	-	0	46	48
합계	0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944	2,04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성실신고확인신고비율(=성실신고확인신고자/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은 2012년 귀속 1.5%에서 2015년 귀속 2.6%까지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신고비율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비 성실신고확인신고자의 비율로 정의하면 100%에 근접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 대비 성실신고확인신고자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신고자 수 및 성실신고확인신고비율은 2014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 -2> 성실신고확인신고자 규모 및 추이

(단위: 명,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성실신고 확인신고자(A)	69,556	65,275	67,937	132,602	138,095	144,985	150,55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B)	-	(-6.2)	(4.1)	(95.2)	(4.1)	(5.0)	(3.8)
성실신고 확인신고비율(A/B)	3,956,702	4,352,929	4,564,682	5,052,552	5,482,678	5,874,671	6,393,891
	-	1.5	1.5	2.6	2.5	2.5	2.4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를 '성실신고확인신고자'라고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1, 각 연도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고 인원은 2015년 귀속 12만 3,616명에서 2016년 귀속 12만 9,25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고금액도 2015년 귀속 약 1,095억원에서 2016년 귀속 약 1,160억원으로 증가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고 인원은 위 표에 제시된 성실신고확인신고자수에 비해 10% 정도 적음
    - 이는 산출세액이 없거나 작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공제감면과의 경합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추측할 수 있음
  - 1인당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88만 6,188원에서 89만 7,557원으로 1.28% 정도 증가함

<표 II -3> 연도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금액	1인당 공제금액	
소득세	'15년	123,616	109,547	0.8862
	'16년	129,252	116,011	0.8976

주: 2015년도부터 해당 세액공제 신고 현황 집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통계연보 2017』, 『국세통계연보 2018』

## 2. 제도의 변천과정

- 본 조의 신설,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표 II-4>와 같음
  - (공제대상 변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기준이 점차 인하되면서 공제대상도 확대되었으며, 2017년 12월 19일에는 공제대상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도 포함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변경은 <표 II-5>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공제한도 변경) 2017년 12월 19일<sup>11)</sup>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공제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공제한도는 150만원으로 신설됨
  - (공제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수준으로 유지됨

11) ‘공제세액 한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은 2018년 12월 13일 개정

<표 II -4> 주요 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제도 신설) 2011. 5. 19. [법률 제106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li> <li>-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li> </ul> </li> <li>○ 공제 기준 소득 범위 및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공제세액 한도는 100만원</li> </ul> </li> <li>○ 세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의 과소신고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 추징</li> </ul> </li> <li>○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li> </ul> </li> <li>○ 일몰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li> </ul>
2013. 1. 1. [법률 제116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기준 소득범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 포함</li> </ul> </li> </ul>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배제 기준일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일 → 경정일로 변경</li> </ul> </li> </ul>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에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포함</li> <li>- 둘 이상의 업종(사업장)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li> </ul> </li> <li>○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120만원</li> <li>-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150만원</li> </ul> </li> </ul>

<표 II -5>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변천

(단위: 억원)

업종	연간 수입금액(매출)		
	2011~2013 <sup>1)</sup>	2014~2017 <sup>2)</sup>	2018~2019 <sup>3)</sup>
	귀속	귀속	귀속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0	20	15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5	10	7.5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5	5	5

주: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1. 6. 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3. 6. 1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8. 2. 13. 개정

### 3. 해외 사례

- 본 절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제도를 살펴봄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는 찾기 어려움
  -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의 경우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관련 장부의 기장·보존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증빙의 진실성이나 관련 계산내역의 정확성을 검증하지는 않음
  -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 네덜란드의 수평적 세원관리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보다는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음
    - 성실납세협약제도는 국세청이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한 법인과 세무문제를 사전협의·해결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협약 체결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성실납세협약제도의 신청대상은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의 법인임

#### 가. 일본의 청색신고제도<sup>12)</sup>

##### 1) 개요 및 목적

- 청색신고제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미국의 샤프 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수행한 세계개혁의 일환으로 종전 직후인 1947년에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청색신고제도는 기장의 보급을 확대해 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됨
  -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장부의 기장·보존 등의 의무를 부여함

12) 정지선·구자은(2014), pp. 273~280을 정리하여 작성함

-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해당되나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작성함
  - 단, 법인의 경우 청색신고서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함

## 2)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및 신청거부

- 법인이 청색신고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한까지 기타 재무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22조)
  - 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와 그 취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24조)
    - 만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법인세법」 제125조)
  - 신청서에 장부비치 위반 등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123조)
    - (신청거부 사유) ① 신청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이 재무성령이 규정하고 있는 ‘청색신고법인의 장부서류(아래에서 후술)’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비치·기장한 장부서류에 관한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폐 또는 가장하여 기재(기록)하거나 기타 부실기재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청색신고 승인취소의 통지를 받거나 또는 청색신고의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 3) 혜택

- (「법인세법」상의 혜택)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법인세법」 제57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법인세법」 제80조), 경정통지서의 이유부기의 강제(「법인세법」 제130조), 추계과세의 금지(「법인세법」 제131조)

- 「조세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상의 혜택) 시험연구비에 대한 법인세액 특별공제(「특조법」 42의4),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각종 특별상각제도와 특별세액공제의 허용(「특조법」 42의5 외),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각종 할증상각의 허용(「특조법」 46 외),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각종 준비금 설정의 허용(「특조법」 55 외), 중소기업자의 소액 감가상각자산(30만엔 미만)에 대한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특조법」 67의 5)

#### 4) 청색신고자의 장부서류 기록 및 보관 의무

-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장부를 일정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또 소관 세무서장이 장부의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따라야 함(「법인세법」 제126조)
  - 「회사법」상 회계장부의 보관기간은 10년이고, 「법인세법」상 장부서류의 보관기간은 7년인데, 이는 이월결손금 최대 공제기간이 7년이기 때문임
  - 단, 종이장부 보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장부와 결산서류의 경우에는 6년째와 7년째, 증빙서류는 4년째부터 7년째까지의 경우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보존이 가능함
  - 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전자데이터에 의한 보관이 가능함

#### 5) 청색신고 승인에 대한 취소 및 효과

- 청색신고 승인을 받은 법인이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승인취소 사유) ①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 ② 장부서류에 대한 세무서장의 필요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장부서류에 대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가장(假裝)하여 기재하거나, 기타 기재사항의 전체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확정신고서(청산 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서 포함)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청색신고 승인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두 적용됨

## 6) 청색신고의 포기

- 청색신고 승인을 받은 자가 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월 이내에(개인의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포기신고서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각 연도별 청색신고 승인에 대한 효력이 상실됨(「법인세법」 128조, 「소득세법」 151조)
  - 다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년간은 청색신고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음(「소득세법」 145조, 「법인세법」 128조)

### 나.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Compliance Assurance Process: CAP)<sup>13)</sup>

#### 1) 개요 및 목적

- 미국의 과세당국은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대금 수수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구체적인 정보란, 소득이나 대금을 수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거래금액 등을 말함
-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Compliance Assurance Process: CAP)는 국세청과 기업 간의 투명한 협력을 촉진하고 세무행정과 납세순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청기업은 모든 거래정보 및 세무처리 방침 등을 공개하고 국세청과 중요 세무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여 일정한 합의를 도출함

13) 정지선·구자은(2014), pp. 278~279, 박인목·홍정화(2012), pp. 208~209를 인용하였고, 미국 국세청의 Internal Revenue Manuals 중 4.51.8 Compliance Assurance Process(CAP) Examinations의 일부를 번역하여 정리함

- 본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업 전반에 대한 개요, 현 조직도(특수관계자 포함)와 정보의 흐름, 재무 운영 정보, 예상되는 중요한 거래나 사건, 회계기록 및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함
- 이때 국세청은 신청납세자의 해당 연도 중요 거래 및 세무처리를 실시간으로 조사함
- 완전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미래의 불확실한 거래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내부 세무통제는 불필요함

## 2) 도입 시기 및 대상

- (도입 시기)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는 2005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3월 11일에 영구화됨
  - 2005년 17개, 2006년 13개, 2007년 73개, 2008년 95개, 2009년 101개, 2010년 112개의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였음
- (도입 대상) 대기업 및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에 해당 제도를 적용함
  - 조세행정 향상에 관심을 표명한 업종별 선도 기업
  - 세무조사 중인 기업으로서 향후 사업연도에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를 적용받기를 원하는 기업
  - 국세청의 시범실시제도에 기참여한 기업
  -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인지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기업
  -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인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은 기업
  - 중요한 행정소송이 없는 기업기준을 충족한 기업

## 3) 혜택 및 편익

- 본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조세확실성 확보, 자원절약, 재무보고 정확성 제고(세금충당금 산정, 수정 주정부 세금신고 불필요 등)라는 편익을, 국세청은 납세순응도 증진, 실시간 세금신고 검증, 새로운 세금쟁점 파악, 자원절약에 따른 조사비율 제고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음

#### 4) 제도 종료 및 철회

- 국세청이 납세자가 해당 제도의 책임 및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관할 지역 관리자(Territory Manager)는 납세자에게 관련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함
  -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현장운영이사(Director, Field Operations: DFO)는 납세자에게 해당 제도의 적용이 종료됨을 고지하며, 이후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의 신고서를 기존의 방법대로 사후심사함
  
-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의 종료가 고지됨
  - 정보 문서 요청(Information Document Request: IDR)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응답을 제공한 경우 혹은 IDR의 응답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및 기타 중요사항을 철저히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조세피난처 또는 상장거래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을 제한하는 소송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 스스로 해당 제도의 책임 및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우, 납세자는 제도철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서 수령 후 해당 제도의 적용이 종료됨을 고지하고 해당 납세자의 신고서를 기존의 방법대로 사후심사함

#### 다.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Annual Compliance Arrangement: ACA)<sup>14)</sup>

##### 1) 개요 및 목적

-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는 과세당국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과세에 대한 확실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4) 정지선·구자은(2014), p. 279, 안종석(2012), pp. 242~243, 박인목·홍정화(2012), pp. 209~210를 인용하였고,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의 일부를 번역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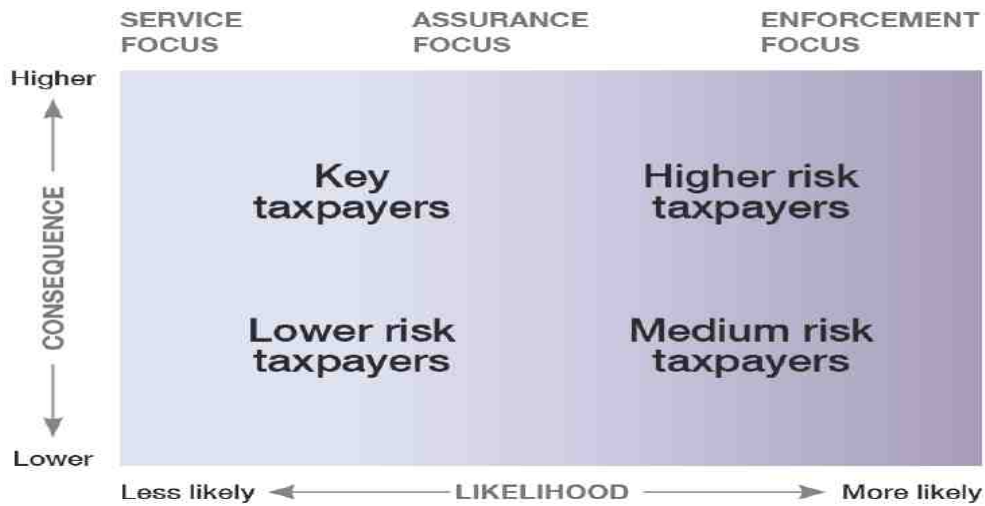
-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동 위험관리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조사면제증명서(a sign-off letter)를 발행함
-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국세청이 제시하는 건전한 기업경영구조 준수 의무와 관련된 세무문제를 과세당국에 공개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연중 워크숍을 개최함
  - 세법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 주요 거래가 발생한 경우
  -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 중요한 국제과세문제
  - 경제적 실질과 다른 조세 결과가 나타난 경우
  - ATO나 법정이 다른 견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연말에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한 후에는 ATO와 납세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법정 계정 및 세무조정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조세위험을 검토하며, ATO는 공동 위험관리 결과를 확인하는 조사면제증명서(a sign-off letter)를 발행함
  - 조세위험이 낮을 경우 납세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 조세위험이 높을 경우 납세자와의 협의를 통해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
  - 납세자가 중대한 위험사항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경우 혹은 국세청이 사기 또는 탈세로 인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청은 납세 준수를 위한 활동을 재실시함

## 2) 도입 시기 및 대상

- 성실납세약정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건전한 기업경영구조와 세무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대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 2008년 2개의 대기업(ANZ 은행, Integral Energy)이 협약을 체결함
  - 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한함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기업이 성실납세약정제도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
  - 위험 구별 프레임워크(risk differentiation framework: RDF)에 따라 주 납세자(key taxpayer)로 분류

[그림 II -1] risk differentiation framework(RDF) 분류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Inspector-General of Taxation(2013), p. 40, figure 9

- 문제 또는 위험 해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국세청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과거 납세 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음
- 세무위험 관리 및 거버넌스 검토 가이드(governance review guide)에 맞게 조율된 법인세 관리 방식이 있음
- 국세청과 비슷한 견해를 따르고 있음
- 완전공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세청과의 견해가 다르거나 잠재적 세무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도에 조기 참여하고자 함
- 세금신고서를 제시간에 완벽하게 제출하며, 추가적인 정보 요청도 기꺼이 따름
-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
- 세무위험 및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세무 시스템 향상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함
- 경고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정당한 방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얻고 있음
- 자발적 세금 투명성 코드(Voluntary Tax Transparency Code)를 갖고 있음

### 3) 절차

- 기업이 성실납세약정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첫 4주) 과세당국과 기업은 성실납세약정제도 체결 적격성을 검토하는 미팅을 실시함
    - 과세당국은 ‘납세협력 문화’<sup>15)</sup>의 근거자료에 따라 적격성을 검토하며, 이때 검토 범위, 시간표, 작업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작성함
  - (4~18주) 과세당국은 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위험관리, 일반적인 협력, 정보시스템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함
  - (18~24주) 작업반은 계약의 주된 내용과 일정을 포함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체결 서명을 요청하며, 관련 조항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함

### 4) 혜택 및 편익

- 성실납세약정제도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편익을 얻을 수 있음
  -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issue)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납세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을 확보함
  - 국세청 고위 공직자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함
  - 합의된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정보 획득
  - 성실납세약정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사후위험 검토 및 감사대상에서 제외됨
  - 성실납세약정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세무입장신고(Reportable Tax Position: RTP)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됨
  - 납세준수 사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 5) 제도 철회

- 납세자와 국세청 모두 언제든지 성실납세약정제도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를 신청한 자는 상대방에게 철회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15) 기업은 건전한 기업 경영구조, 위험관리, 납세협력을 달성·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납세협력 문화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기업구조,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통해 이루어짐

## 라. 네덜란드의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sup>16)</sup>

### 1) 개요 및 목적

- 네덜란드 국세청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상호신뢰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를 도입함
  - 지난 과세연도조사 등에 따른 조사과정상 마찰 및 소송으로 양측 모두에게 많은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됨
  
- 수평적 세원관리제도하에서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 TCF)<sup>17)</sup>를 갖춘 기업은 과세당국과 성실협약(maintenance covenant)을 체결하게 됨
  -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TCF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그 외에 중요한 문제는 과세당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해결하게 됨
  - 그리고 과세당국은 성실협약 체결 기업이 최종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조사 없이 수용함

### 2) 도입 시기 및 대상

-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적절한 TCF를 갖춘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며, 2005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이후, 2006년 중소기업, 2007년 중견기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됨
  - 2005년 대기업들과 신사협정을 체결하였고, 2006년에 20개 기업이 추가됨
  - 2008년에는 1,486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에는 1,673개로 확대됨

16) 정지선·구자은(2014), p. 278, 박인목·홍정화(2012), pp. 207~20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검색일자: 2019. 12. 19.)를 인용하였고, The Netherlands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2010)의 일부를 번역하여 정리함

17) TCF는 각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조직·운영되어야 하므로 TCF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없으며, 기업의 일상적인 세무문제는 TCF를 통해 통제됨. TCF를 통해 통제될 수 없는 새로운 세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실시간으로 과세관청에 동 문제를 공개하고, 과세당국은 원칙적으로 8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며, 세무문제에 관하여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원에서 불복을 심사하여 동 판결에 따르게 됨. TCF는 세무통제조직, 세무위협관리, 정보기술, 세무계획, 세무기장, 세무신고, 납세협력의무, 의사소통, 구성원 훈련으로 구성된다.

-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
- 성신헌약은 현재 및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현재·미래를 대상기간으로 하며, 지난 기간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협약체결 전에 종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절차

- 수평적 세원관리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은 없으며, 국세청 및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 시 참고하는 TCF 업무연락(memorandum)이 있음
  -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체결 제의는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먼저 할 수 있음(two-way communication)
- 협약이 체결되면 3개월마다 정기 미팅을 실시하며, 이때 체결 기업의 TCF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샘플테스트를 통해 진단함

### 4) 혜택 및 편익

- 협약의 체결로 세무조사의 횟수 및 강도는 경감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필요시 세무조사를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

### Ⅲ. 타당성 분석





### Ⅲ. 타당성 분석

####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 가. 정부개입의 적절성

-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26조의6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 목적은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과 책임 있는 세무대리 관행의 정착’임
- 대규모 개인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sup>18)</sup> 함께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sup>19)</sup>(이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의 성실신고는 자발적인 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절감을 이끌 수 있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18)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함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기준<sup>\*A\*B</sup>>

업종	수입금액 기준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sup>*C</sup> ,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7.5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A: 위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하고, 이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함

\*B: ①·②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따른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③의 기준 수입금액을 적용함

\*C: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함

19)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범위>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접대비 한도액 50% 축소대상 특정 법인 <sup>*A</sup> ) <sup>*B</sup>
②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 <sup>*B*C</sup>

\*A: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 전문회사·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

\*B: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외

\*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

발전에 필요한 무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sup>20)</sup>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상당한 수준의 tax gap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안종석·강성훈·오종현, 2017), 이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

○ tax gap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이론적 세금부담과 실질적 세금부담 간의 격차임

- tax gap은 과소신고 gap과 과소납부 gap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소신고 gap은 다시 신고기한 후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 과세관청이 발견한 과소신고 gap과 과세관청이 파악하지 못하는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gap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안종석·강성훈·오종현(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gap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과소신고 gap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며,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이나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업이 많은 등 과소신고 gap의 발생가능성과 소득 대비 과소신고 세액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2011년의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안종석·강성훈·오종현(2017)의 분석 결과, 관측된 과소신고율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이 각각 6.9% 및 17.5%로 나타나 과소신고 gap을 나타내는 총 과소신고율은 24.5%로 추정됨

□ 이에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함

○ 그러나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0)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종전의 인적·물적 자본과 구분해서 ‘사회구성원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조건 또는 특성’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 과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됨

-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낮은 수수료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과세당국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며, 부양가족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 앞선 절의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원 대신 조세지원이 타당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 류덕현과 박기백(2012)<sup>21)</sup> 정리한 <표 III-1>의 기준을 적용해서 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절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적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욱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함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의 정책수단 선택과 관련한 <표 III-1>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먼저 수혜자의 측면에서 성실신고 확인을 전후한 사업활동에서 명시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고, 지원대상으로 별도의 취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보조대상 및 보조수준의 측면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이 영리기업의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활동으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게 더욱 큰 조세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21) 류덕현·박기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표 III-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기준

구분	재정지출	조세지출
수혜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li> <li>- 취약계층 중심인 경우</li> <li>- 수혜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li> <li>- 특정 수혜자만 혜택을 주고 싶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li> <li>- 일반 계층 중심(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는 없는지 판단)</li> <li>-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 경우</li> <li>-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다수 지원 목적)</li> </ul>
보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대상이 다양하여 보조수준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li> <li>-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필수비용인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효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li> <li>-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저축, 건강보험 등)</li> </ul>
보조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수준이 높은 경우</li> <li>-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li> <li>-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예측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li> </ul>
지원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또는 사전적 지원에 적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li> </ul>
행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점검, 결과확인 등이 필요하여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li> <li>-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에 순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li> <li>-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적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출 시 관여 기관, 인원, 선정 절차 등이 매우 어려울 경우</li> <li>- 적합한 대상자 선정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li> <li>-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li> </ul>
부작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li> <li>-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li> <li>- 지원한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li> <li>-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li> <li>-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li> </ul>

자료: 류덕현·박기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 다음으로, 지원기간 및 지원시점의 측면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규모에 해당할 경우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중장기적 지원의 성격과 함께 이들 사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행정집행의 측면에서는 개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과 관련된 개별적 사정을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부정사용 가능성도 큰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부작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을 통해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재정지원과 다르게 세법 규정을 통해 지원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즉, 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상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조세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수단의 적절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과 책임 있는 세무대리 관행의 정착을 정책목표로 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러한 정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면 아래와 같음
- 먼저, 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구성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은 대부분 외부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세무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는<sup>22)</sup> 대부분 제외됨

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의

- 따라서 재무제표의 적절한 감사를 통해 수입금액의 누락 방지와 함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적절한 필요경비의 계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의 성실성도 제고할 수 없는 것임
- 실제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성실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매출 등을 통한 수입금액의 누락과 함께 추계과세의 방식으로 과도한 필요경비를 계상해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행태가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필요경비의 계상과 관련해서 이들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방식 대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과세상 불이익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통해 추계방식이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방식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과세체계의 한계점으로 인해 성실신고의 이행을 유도하기 어려운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사전적 확인을 통해 세원양성화를 강화하는 것이 세수 확대 및 징수비용의 절감 등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하면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한 기대효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에서<sup>23)</sup> <표 III-2> 및 <표 III-3>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

한 외부감사의 대상은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2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6호의 서식의 <첨부 1>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서식(2)임

하고,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sup>24)</sup> 및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sup>25)</sup>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2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6호의 서식의 <첨부 2>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서식(3)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현황, 수입금액, 적격증빙비용(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서식인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시 적격증빙 없는 비용에 대한 내역 누락 여부,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특이사항과 함께 성실신고확인자 종합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음.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기본사항, 수입금액, 유형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선급금 및 선수금,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특이사항과 함께 성실신고확인자 종합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 2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6호의 서식의 <첨부 3>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서식(4)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채고자산의 실제 채고와 장부상 채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및 “사업용 계좌 외 친·인척,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의 공통 확인내용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입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의료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및 “(의료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의 업종별 확인내용에 대하여 사업자확인(예, 아니오)을 기술하도록 하였음.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채고자산의 실제 채고와 장부상 채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입 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및 “(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의 수입금액 확인내용에 대하여 사업자확인(예, 아니오)을 기술하도록 하였음

<표 III-2>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의 기재사항(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분	세부내용
사업장 현황	사업장 등록사항(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기본사항(소유 구분, 건물 층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월세, 종업원 수, 차량 대수)
주요 사업내역 현황	주요 매출처 <sup>26)</sup>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요 매입처 <sup>27)</sup>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요 유형자산 명세(계정과목, 자산내역, 수량, 취득가액, 연간 리스료, 취득일)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계정과목, 차입처, 차입금 용도, 차입금액,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수입금액 검토	수입금액 신고 현황(총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 <sup>28)</sup> , 사업장 현황신고분, 차이금액 <sup>29)</sup> , 차이원인) 매출증빙발행 현황(총수입금액, 매출증빙발행 금액 <sup>30)</sup> , 차이금액, 차이원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sup>31)</sup>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공급가액(공급대가), 봉사료, 공급가액(공급대가)의 100분의 20 초과 봉사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 차이금액 <sup>32)</sup> , 차이원인]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 지급명세서 금액, 차이금액, 차이원인) - 연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 <sup>33)</sup>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개별소비세 신고과표, 환산과표 <sup>34)</sup> , 차이 <sup>35)</sup> , 차이원인)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검토	표준손익계산서 <sup>36)</sup> 항목(① 당기매입액 ② 의약품비 ③ 복리후생비 ④ 여비교통비 ⑤ 임차료 ⑥ 보험료 ⑦ 수선비 ⑧ 접대비 ⑨ 광고선전비 ⑩ 운반비 ⑪ 차량유지비 ⑫ 지급수수료 ⑬ 판매수수료 ⑭ 소모품비 ⑮ 인적용역비 ⑯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⑰ 영업외비용에 대하여 당기계상액 <sup>37)</sup> , 적격증빙 <sup>38)</sup> 수취 의무 제외 <sup>39)</sup> , 적격증빙 수취 의무 <sup>40)</sup> )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지급 현황(급여와 임금·제수당에 대하여 당기계상액, 비과세·과세대상 제외 <sup>41)</sup>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sup>42)</sup> , 차이금액 <sup>43)</sup> , 차이원인) 표준원가명세서 <sup>44)</sup> 항목(① 당기재료 매입액 ② 운임 ③ 수선비 ④ 소모품비 ⑤ 임차료 ⑥ 보험료 ⑦ 복리후생비 ⑧ 여비교통비 ⑨ 접대비 ⑩ 차량유지비 ⑪ 외주가공비 ⑫ 기타경비에 대하여 당기계상액,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제외, 적격증빙 수취 의무) 표준원가계산서상 급여지급 현황(급여와 임금·제수당에 대하여 당기계상액, 비과세·과세대상 제외,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차이금액, 차이원인)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sup>45)</sup>	계정과목, 거래일자, 상호, 성명, 금액, 거래내용, 증빙불비 원인

<표 III-2>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사업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 <sup>46)</sup>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sup>47)</sup> , 관계, 거래금액) 대표자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법인과와의 거래내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sup>48)</sup> , 관계, 거래금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sup>49)</sup> 지급명세[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사일(퇴사일), 담당 직무, 지급액, 비과세·과세대상 제외 <sup>50)</sup>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sup>51)</sup>
차량운영현황 <sup>52)</sup> <sup>53)</sup>	차종, 배기량, 차량번호, 취득일, 보험계약서의 소유자, 용도, 취득금액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개설은행, 계좌번호, 기초 잔액, 기말 잔액

- 26)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 27) 전체 매입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 28) 과세분, 영세율분, 면세분 및 소계
- 29) 총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 신고분의 차이금액
- 30)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선불·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GIRO)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봉사료 발생 사업자만 작성
- 32) 공급가액(공급대가)의 100분의 20 초과 봉사료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의 차이금액
- 33) 과세유형장소만 작성
- 34) 개별소비세 신고과표×1.3
- 35)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및 환산과표의 차이금액
- 36)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 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은 표준원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표준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각 항목 외의 비용만 표준손익계산서에 기재
- 37)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제외 및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합계
- 3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신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 39) 건당 3만원 이하 및 기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함)로 구분
- 40) 적격증빙, 적격증빙 외의 증빙 및 증빙불비로 구분
-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 42) 근로소득(연말정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및 근로소득(일용근로)로 구분
- 43) 당기계상액-(비과세·과세대상제외+지급명세서 제출금액)
- 44)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 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에서 작성
- 45)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의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내역 기재(영수증 등 적격증빙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서식인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46) 인건비 제외
- 47)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48)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49)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포함
- 50)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51)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 52) 업무용에 한함
- 53) 보험계약서의 소유자가 사업자 본인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작성

<표 III-3>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의 기재사항(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구분	세부내용
사업장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소유 구분, 건물 층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대수
주요 사업내역 현황	주요 매출처(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요 매입처(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요 유형자산 명세 <sup>54)</sup>	취득일자, 계정과목, 자산내역(품명), 소재지, 수량, 취득가액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sup>55)</sup>	계정과목, 차입처명, 차입금 용도 <sup>56)</sup> , 차입금액,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sup>57)</sup>	계정과목, 대여처명, 대여 사유 <sup>58)</sup> , 대여금액, 연간 이자수익, 대여일, 만기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sup>59)</sup>	계정과목, 거래처명, 잔액, 비고 <sup>60)</sup>
선수금 및 선급금 명세 <sup>61)</sup>	계정과목, 거래처명, 장액, 용도 <sup>62)</sup>
임원 현황 <sup>63)</sup>	성명, 출생연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총수입금액 <sup>64)</sup> , 매출증빙발행 금액 <sup>65)</sup> , 차이금액, 차이원인 <sup>66)</sup>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 <sup>67)</sup> 지급 명세	종류 <sup>68)</sup>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사일(퇴사일), 담당 직무, 지급액, 비과세·과세대상 제외 <sup>69)</sup>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sup>70)</sup>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법인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관계, 지급보증금액(담보제공금액), 내역 <sup>71)</sup> , 여신금융기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sup>72)</sup>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계정과목 <sup>73)</sup> ,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sup>74)</sup> , 수취제외대상 금액, 차이 <sup>75)</sup>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제외대상 금액, 차이)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계정과목 <sup>76)</sup> ,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제외대상 금액, 차이) 및 합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계정과목, 거래일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금액, 거래내용, 증빙불비 원인 <sup>77)</sup>
금융계좌 잔액 명세	개설은행, 계좌번호, 구분 <sup>78)</sup> , 기초 잔액, 기말 잔액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 명세	구매일자, 발행자명, 발행금액, 매수, 구매금액, 사용 용도 <sup>79)</sup> , 구분 <sup>80)</sup>

54)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업무용 승용차 제외)

55) 차입금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

56)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및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기재

57)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여금

58)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및 직원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기재

□ 다음으로, 책임 있는 세무대리 관행의 정착의 측면에서도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즉,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귀착되고, 해당 사업자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제한적 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에 대한 추가적 부담액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국가 및 개별 사업자로부터 사실상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지원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불성실한 성실신고 확인에 대하여 개별 사업자가 계약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의 법률적 책임 해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거나 세무대리 시장의 자율경쟁에서 도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실신고 확인의 질적 수준을

- 
- 59)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및 채무
  - 6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의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기재
  - 61)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선급금 및 선수금
  - 62)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및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등으로 기재
  - 6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6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㉓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
  - 6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선불·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지로(GIRO)[세금계산서와 신용·선불·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지로가 중복될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계산서와 신용·선불·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지로가 중복될 경우 계산서에 기재]
  - 66)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의 증빙서류 외의 영수증 등(영수증 및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 67) 일용직 등 포함
  - 68) 지급명세서 종류(근로, 퇴직, 일용, 사업 및 기타)를 기재
  - 69)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70) 각종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총액(세진)을 기재
  - 71) 채무보증, 부동산담보 및 예금담보 등 보증·담보내용을 기재
  - 72)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
  - 73) 코드, 과목명 및 금액
  - 74) 신용카드 등(법인, 개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구분
  - 75) 계정과목-(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수취제외대상 금액)
  - 76) 구분, 코드, 과목명 및 금액
  - 7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① (제2호) ② (제3호) ③ (제4호) ④ (제5호) 및 ⑤ (기타, 구체적 사유 기재)의 번호로 기재
  - 78)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을 기재
  - 79) 거래처 접대 및 복리후생 등을 기재
  - 8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인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경우 및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경우에 각각 ‘접대비’, ‘원천징수’ 및 ‘소득처분’으로 표시

제고시킬 수 있고, 과세관청도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것과 같이 성실신고의 확대를 강제할 수 있음.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바람직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책임 있는 세무대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도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현행 법령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세법상 제재로는 이들이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5%)로 계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또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로는 허위확인 금액의 규모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있음(「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기획재정부).
- 허위확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확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확인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이들과 성격이 유사한 소규모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실신고 확대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나머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비해 불성실신고로 인해 전체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세무대리를 위한 기본적 비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이 과중한 부담으로 인식되어서 이러한 상황에 맞춘 세무대리인의 박리다매식의 편의적 성실신고 확인이 만연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 적용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수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인사업자로 한정해서 동(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대적으로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적용받아서 별도의 성실신고 확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책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도 아닌 성실신고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성실신고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의 확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계속해서 확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유예기간 이후에도 이전의 수입금액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대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유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기간까지 계속해서 확인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 가. 제도 운영의 적절성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각 120만원 및 15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 여기서 한도액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일정 비율로 공제액을 규정한 것은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성실신고 확인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성실신고 확대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적 제도 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인은 당초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외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sup>81)</sup>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또는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대상 회피가 방지되어서 당초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제도가 충실히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성실신고 확인비용과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사업자의 실제 부담이 성실신고 확인의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동 세액공제 외에도 성실신고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추가적인 조세부담 감소가 가능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해 3억원 이상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계세율이 38% 이상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41.8%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동(同) 확인비용에 대한 60%의 세액공제율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억 956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추가적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와 같이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항목별 공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 유인을 보완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시선정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세법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81) 접대비 한도액 50% 축소대상 특정 법인인데, 이들 법인은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배당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의미한다. 단,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82)</sup>
- 구체적으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동(同)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함<sup>83)</sup>
-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 MIN(월세액, 750만원)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함

□ 단,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세무대리 업무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생해서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형식적인 성실신고 확인에 그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세법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이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등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세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와 같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동(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사후적인 세법상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법상 규제도 신설해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즉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의 불성실신고가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정해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에 비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

82) 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2018년 실적, 2019년 및 2020년 전망은 각각 326억원, 411억원 및 433억원임

83)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충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대리인에 대한 「세무사법」 등의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식과 같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후검증<sup>84)</sup> 및 강제적 교차검증을<sup>85)</sup> 전제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신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조세혜택의 제공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sup>86)</sup>

84) 세법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많은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세무조사로는 많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임. 또한 경제 규모의 확대로 세무조사 인력 등 조세행정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세원의 다양화로 세무공무원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다양한 양태의 세원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담세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임. 하지만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의 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가 조세탈루혐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납세자의 신고 전 예비과정에 개입하여 신고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의 기초인 납세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김.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과세당국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성실성 검증을 하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넓고 비용이 과도하지 않는다 해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성실성 검증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가 자발적인 신고를 한 후 조세전문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성실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납세자군에 포함된 사업자가 신고 후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부터 받은 체크리스트에 의해 엄격한 신고 후 성실신고확인(세무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임(이상의 내용은 구재이(2015)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48호에서 인용).

85)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정부의 의도였음.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반발과 혼란을 막고 제도적 안정을 기하는 데 필요했던 것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는 물론 외부 세무조정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한 조세전문가는 계약에 따라 업무의 위탁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대가를 주고받게 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고도의 성실성 검증이 요구되는 정부가 납세자의 신고성실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업무를 전문가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성질의 성실신고 확인업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그동안의 시행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특히 향후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성질의 사후적인 신고검증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사후적 성실신고확인(세무검증)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회계대행 및 세무조정을 한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을 배제하거나 일부 제한이 필요할 것임(구재이, 2015).

86)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가 신고절차상 자신의 신고성실도를 높이고자 하는 자발적 과정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납세자 자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성을 검증하는 절차임. 그러므로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로부터 신고성실도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더구나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용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별도의 검증방식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여도 과세행정상 무리가 없을 것임. 그러므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에 대한 적정한 확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선정방식에 따른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이 경우라도 무작위추출 방식에 따른 세무조사나 객관적인

## 나.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조세지원의 전체 한도와는 무관하게 시행하고 있음<sup>87)</sup>.
  - 개별적인 과세체계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조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하게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는 성실사업자 우대제도가 있음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하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면서 전체 거래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개인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규정함. 이들에게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 대신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함<sup>88)</sup>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후 허위 또는 불성실확인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사선정에 따른 세무조사가 당연히 가능할 것임.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배제할 필요성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갖는 성질에서 비롯된 이종의 세무간섭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이상의 내용은 구재이(2015)를 일부 수정]

- 87) 전술한 바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반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조특법」 제132조 제2항).
- 88)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의 내용>

구분	특별세액공제
상용근로소득자	항목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중 선택 <sup>*A</sup> - 항목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sup>*B</sup> 및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MAX[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A: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중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

\*B: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에 따른 추가 요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③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갖춘 자

- 특히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복식부기를 기록·관리하고, 수입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성실사업자 우대제도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동일하게 성실신고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조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89)</sup>
-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조세지원과 함께 다양한 재정지원의 적극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사업자들의 일반적인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충당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재정지원이 제공되지만, 성실신고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 항목은 발견하기 어렵고, 일반적 용도의 예산지원 항목인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일 때에는 부당적용으로 인한 사후적 불이익을 고려해서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과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89) 협약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1,50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내부세무통제시스템(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을 갖춘 법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해결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성실납세협약제도(2015년 7월 이전에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수입금액 규모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해당할 수 없고, 명시적인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명시적인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IV. 효과성 분석





## IV. 효과성 분석

### 1. 효과성 분석의 목적 및 내용

- 본 장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경감 시킴으로써 실제로 납세자들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동 제도는 1차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임
  -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확인을 원활히 진행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효과성을 다루기 위한 1차적인 분석으로 각 사업자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분포를 살펴봄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동 제도이므로 이를 통해 세액공제가 얼마나 사업자들의 확인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지 확인함
  - 세액공제 확인비용 경감 효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대비 동 제도의 세액공제액을 비교하는 것임
  - 그러나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전산화되지 않아 연구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임
  -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대안으로 동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를 부담세액과 비교하여 세액공제로 인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업자의 부담경감 효과를 살펴봄
  
- 한편, 효과성 분석의 핵심은 동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성실신고 행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성실신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는 납세자의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소득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
  - 설령 회계감사보고서라도 해당 자료가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회계상의 소득은 영업실적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과대보고의 유인이 있으며, 세무상의 소득은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소보고할 유인이 있음
  - 따라서 제도를 잘 따르더라도 동일한 소득에 대한 각각의 소득보고는 최대한 유인에 따라 작성하려 할 것임

□ 이에 본 장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행태 변화를 보여주는 대체변수로서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신고소득률을 적용하여 제도 효과를 분석함

- 김성우 외(2017), 박주영 외(2014), 윤태화·정해욱(2007) 등에서 신고소득률의 개념을 활용하여 성실신고 행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신고소득률은 총수입금액 중 신고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begin{aligned}
 \text{신고소득률} &= \text{신고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총수입금액} \\
 &= 1 - \left( \frac{\text{필요경비}}{\text{총수입금액}} \right)
 \end{aligned}$$

- 신고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됨
- 신고소득률이 신고소득과 실제소득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면 성실신고 여부를 보여주는 대체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수입금액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필요경비를 확대하여 보고할 유인이 있음
  - 상기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총수입금액을 축소하거나 필요경비를 확대하면 신고소득률은 낮아지게 됨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여 얼마나 신고소득률이 높아졌느냐를 가지고 성실신고 여부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논의는 실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후에 관계없이 거의 바뀌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유의미한 설명이 됨

- 본 장의 이하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후를 대조군과 함께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신고소득률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분석은 평균적으로 실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성실 신고확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함
- 끝으로 2017년 말 제도 개정과정에서 비용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와는 별개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변화시점에 제도 대상자들의 행태 변화를 살펴봄
  - 본 장에서 수행할 이중차분법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두 제도는 함께 패키지 형태로 시행되고, 제도가 개편되어 성실신고확인제도와는 별개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만의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일하게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상관없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에 있었던 변화인 2017년 말의 공제한도 확대시점의 대상자 행태 변화를 사례 분석함

## 2. 효과성 분석 방법 및 자료

### 가. 효과성 분석방법론

####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세부담 경감 효과 분석

- 동 제도의 세부담 경감 효과는 세액공제 규모가 개별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임
  - 상술한 바와 같이 동 제도의 직접적인 납세사업자 부담경감 효과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중 어느 정도를 세액공제로 환급해 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분석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총액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항목은 아직 국세청에서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임

- 또한, 동 제도의 세액공제액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여 실제 자료로 살펴보다도 평균적으로 확인비용의 6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음
    - 공제한도액이 120~150만원(사업자는 120만원, 내국법인은 1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비용이 120만원(또는 1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은 비용의 60%에 채 이르지 못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확인비용 경감수준 대신 납세사업자의 세 부담에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액공제금액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부담경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이 실제 납세액보다 총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 클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제도의 세액공제액이 부담세액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동 제도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통계량을 통한 세액공제액의 분포 조사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경감률 분포 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함
- 기초통계량을 통한 세액공제액 분포 조사는 총 세액공제액, 사업자 평균세액공제액, 총수입금액 기준 10분위 분포 등을 파악함
    - 세액공제 절대금액의 분포를 파악하는 분석임
  - 세액공제의 세부담 경감률 분포 분석에서는 세액공제액을 부담세액으로 나눈 값(이하에서 ‘세부담 경감률’로 명칭함)의 사업자 평균값, 총수입금액 기준 10분위 분포 등을 조사함

## 2) 신고소득률의 변화 여부 분석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성실신고를 유도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신고소득률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둘의 효과를 따로 분리해서 추정하기는 어려움
  - 관심 정책(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과 정책목표(성실신고 유도) 간의 인과관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함

- 이때 실험군은 정책에 노출된 집단, 대조군은 정책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실험군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신고소득률 변화에 대한 동 제도의 인과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대조군을 이용하고자 함

- 신고소득률을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아 그 결과를 제도의 순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단순회귀분석이 상관성에 기초한 추세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머무르기 때문에 정책의 순수 효과는 추정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 등을 이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고 제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함

□ 대조군은 수입금액이 동 제도의 대상자 기준 부근에는 있으나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사업자들을, 실험군은 동 제도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다가 제도의 시행 및 개정에 따라 새로 대상자에 편입된 사업자들이 함

- 실험군으로는 2011년, 2014년, 2018년에 동 제도의 대상자 기준 부근에서 수입금액이 있으면서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들이 됨
  - 2011년은 동 제도가 신규로 시행된 시기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30억, 15억, 7.5억은 만족하지만 기준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업자가 실험군이 됨
  - 2014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20억, 10억, 5억원으로 바뀌었으며, 실험군은 수입금액이 개정 전 기준금액보다는 낮고 개정 후 기준금액보다는 높은 사업자가 됨
  - 2018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다시 15억, 7.5억, 5억원으로 바뀌었으며, 실험군은 수입금액이 개정 전 기준금액보다는 낮고 개정 후 기준금액보다는 높은 사업자가 됨
- 대조군은 2011년, 2014년, 2018년에 각각 새로 적용되는 대상 기준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유사하기는 하나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한 사업자가 됨
  -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한 동 제도의 기준 수입금액은 30억원이었는데, 이때 수입금액이 30~40억원인 사업자들을 실험군, 수입금액이 20~30억원인 사업자들을 대조군으로 정할 수 있음

- 2014년에는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한 기준 수입 금액이 20억원으로 인하되었는데, 이때 수입금액이 20~30억원인 집단을 실험군, 수입금액이 10~20억원인 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제도의 도입 및 개정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관심 변수(신고소득률)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을 이용할 수 있음

- 이중차분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도 도입 전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론으로, 정책평가에 널리 쓰임
  - 이중차분법은 인과성에 기초하여 특정 사건(event; 정책, 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충격이 포함될 수 있음)의 순수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임
- 조세특례제도의 순효과를 추정할 경우, 전형적인 이중차분법의 선형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y_{i,t} = \alpha + \beta_{DID} D_t^Y \cdot D_{i,t}^P + \gamma D_t^Y + \delta D_{i,t}^P + \theta X_{i,t} + \epsilon_{i,t}$$

- $y$ : 종속변수(본 연구에서는 신고소득률이 됨)
- $D^Y$ : 정책적용 전후(시기)를 구분하는 더미변수
- $D^P$ : 정책대상 여부(실험군과 대조군)를 구분하는 더미변수
- $X$ : 납세사업자들의 개별 특성변수
- $\epsilon$ : 연구자가 관측하지 못하는 교란항
- 하첨자  $i \cdot t$ :  $i$ 는 개별 사업자를,  $t$ 는 과세연도를 각각 의미함
- $\beta_{DID}$ : 회귀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정하려는 정책의 순효과 계수

### 3) 사례 분석

□ 본 연구에서 상기 설명한 이중차분법으로 기본적인 제도의 순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음

- 동 제도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함께 시행되고 함께 개정되면서 두 제도 간의 개별 효과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유일하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성실신고확인제도와는 무관하게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함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간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2017년 12월 개정에서 공제한도가 확대된 것에 주목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는 무관한 제도변경임
  - 그러나 공제한도 확대에 대하여는 대조균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중차분법과 같은 계량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이 또한 한계가 있음
  - 특히 공제한도가 확대되던 시기에 공제대상(성실신고확인대상)도 함께 확대되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도상으로는 적용내용이 바뀌지 않고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상으로는 적용내용이 바뀌는 집단을 선별하고 해당 집단에서 제도 개편에 따라 어떠한 행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봄
    - 2017년도에 공제대상에 해당되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업자 중 2018년도에도 여전히 공제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이러한 사업자들 중 2018년에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와 2018년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분류해 봄
  - 이렇게 선별한 집단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2017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들이란 것을 의미함
    - ㉠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모두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2017년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2018년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사업자들임
    - ㉡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모두 성실신고를 확인해야 함에도 2개년 모두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들임

#### 나. 효과성 분석 자료

- 본 장에서 진행하는 효과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관련 미시자료임
  - 국세청에서는 본 심층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 간별 납세사업자들의 미시자료를 제공함

- 미시자료는 납세사업자 전수 중 100만여 개(100만 4,289개)를 무작위 추출한 자료로 과세기간, 각종 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부담세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등의 납세 관련 정보가 포함됨
- 해당 자료를 사업자식별번호로 매칭한 후 변수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칭되지 않는 표본과 중복된 표본의 손실 및 이상치 제거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표본크기는 85만 4,295개임
- 이상치(outlier)는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본에서 제거함
  - 첫째는 정의상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임을 감안하여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소득금액} | \geq 100$ 원인 관측치 총 95개는 단순오차범위를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제거함
  - 둘째는 신고소득률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경우로 해당 관측치는 5만 5,452개 있었음<sup>90)</sup>

<표 IV-1> 사업자 납세정보에 대한 미시자료의 연도별 분포

(단위: 개, %)

연도	표본크기(Frequency)	연도별 표본비중	연도별 누적비중
2006년	42,104	4.93	4.93
2007년	47,728	5.59	10.52
2008년	55,085	6.45	16.96
2009년	62,669	7.34	24.30
2010년	70,185	8.22	32.51
2011년	72,174	8.45	40.96
2012년	74,719	8.75	49.71
2013년	76,512	8.96	58.67
2014년	74,336	8.70	67.37
2015년	72,284	8.46	75.83
2016년	71,768	8.40	84.23
2017년	70,459	8.25	92.48
2018년	64,272	7.52	100.00
합계	854,295	100.00	

자료: 저자 작성

90) 신고소득률이 1이 넘는다는 것은 총수입금액(매출액)보다 소득을 더 많이 번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영업과정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0보다 작은 경우는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았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나 사업자가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음

- 연도별로는 최소 4만 2,104개(2006년)부터 최대 7만 6,512개(2013년)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시행 직전연도인 2010년부터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 사이에는 연도별 표본크기가 최소 6만 4천개(2018년: 6만 4,272개) 이상 확보되어 대표성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한 숫자임(<표 IV-1> 참조)

- 이중차분법은 전체 표본 중 동 제도의 시행 및 개정연도와 직전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금액 부근에서 총수입금액을 기록한 표본만 선별하여 사용함
  - 실험군은 직전연도에는 동 제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시행 및 개정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사업자의 해당 두 개년 자료
  - 대조군은 직전연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동 제도의 시행 및 개정 연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 중 총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의 해당 두 개년 자료
- 대조군으로 선택한 사업자들의 총수입금액 규모는 <표 IV-2>와 같음

<표 IV-2> 이중차분법에서 대조군으로 활용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기준

(단위: 억원)

	2010, 2011년 <sup>1)</sup>	2013, 2014년 <sup>2)</sup>	2017, 2018년 <sup>3)</sup>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30	10~20	10~15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0~15	5~10	5~7.5
부동산임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5~7.5	2~5	2~5

주: 1) 2011년은 동 제도 시행연도

2)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총수입금액 기준이 새로 적용됨

3) 2018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총수입금액 기준이 추가로 개정되어 적용됨

자료: 저자 작성

- 분석자료 전체의 기초통계량은 <표 IV-3>에 정리됨
  - 총수입금액의 평균은 9억원 수준이며, 부담세액은 평균적으로 약 1,700만원임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은 음수값도 표본에서 제외하지 않았지만 이중차분법 분석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모두 일정 수준의 총수입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효과성 분석과정에서 음수값으로 인한 왜곡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음

- 신고소득률은 전체 표본에서 약 11.1%로 나타남
  - 상술한 바와 같이 신고소득률이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상치로 간주하여 표본에서 제외된 결과이며, 이상치를 포함해도 해당 평균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음

<표 IV-3> 전체 미시자료의 요약 기초통계량(관측치: 85만 4,295개)

(단위: 백만원, %)

주요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총수입금액	897.55	1,000.83	-712.53	319,704.30
필요경비	832.12	958.15	-293.50	319,582.20
소득금액	65.43	100.17	-419.03	19,073.09
산출세액	19.12	147.68	0.00	19,032.54
부담세액	16.96	150.34	0.00	19,017.9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0.12	0.34	0.00	6.00
신고소득률	11.13	13.77	0.00	100.00

자료: 저자 작성

- 이중차분법의 분석대상이 되는 신고소득률의 연도별 평균값은 <표 IV-4>와 같이 대체로 동 제도의 수혜 집단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평균 신고소득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줄곧 제도 수혜 집단에서 평균 신고소득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역전되어 제도 수혜 집단보다 비수혜 집단에서 평균 신고소득률이 높은 모습이 나타남
  - <표 IV-4>에서 동 제도 수혜자 집단에서 신고소득률이 높은 경향은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제도의 효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현 단계에서는 수혜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경향이 집단 구성원의 평균적인 특성의 차이인지 정책의 효과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특히 2017년, 2018년 사이에 비수혜자 집단의 신고소득률이 높은 것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동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도 있음
    - 제3절의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를 통해 동 제도에 따른 정책 효과의 인과성에 대해 논의함

<표 IV-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수혜 여부에 따른 연도별 평균 신고소득률

(단위: 개, %)

연도	세액공제 미적용		세액공제 적용	
	사업자 수	평균 신고소득률	사업자 수	평균 신고소득률
2006	42,104	10.13	미시행	
2007	47,728	10.14		
2008	55,085	9.88		
2009	62,669	9.89		
2010	70,185	9.79		
2011	64,164	10.02		
2012	67,256	10.34	7,463	11.82
2013	68,950	10.54	7,562	12.21
2014	59,139	11.58	15,197	11.95
2015	57,850	12.28	14,434	12.32
2016	57,350	12.63	14,418	12.74
2017	54,723	13.02	15,736	12.57
2018	42,523	13.82	21,749	11.62
합계 평균	749,726	11.00	104,569	12.09

자료: 저자 작성

- 아래 표에서는 업종별 신고소득률 및 총수입금액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음<sup>91)</sup>
- 동 제도 적용대상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각호로 분류한 산업을 이용하였음
    - 제1호: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제2호: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제3호: 부동산임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91) 여기에서는 제도 도입 후 행태 변화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고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귀속 연도 2006~2010년 자료만 이용함

- 신고소득률은 제3호, 제2호, 제1호 순으로 그 수준이 높고, 총수입금액은 제1호, 제2호, 제3호 순으로 규모가 큼
  - 각호별 평균 신고소득률은 제1호 5.82%, 제2호 8.62%, 제3호 20.95%임
  - 각호별 평균 총수입금액은 제1호 11.33억원, 제2호 7.51억원, 제3호 2.71억원임

<표 IV-5> 신고소득률 기초통계량

(단위: %)

표본	관측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98,666	5.82	4.31	8.78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26,948	8.62	6.12	10.86
부동산임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52,157	20.95	16.45	16.51

자료: 저자 작성

<표 IV-6> 총수입금액 기초통계량

(단위: 억원)

표본	관측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98,666	11.33	9.72	9.41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26,948	7.51	5.65	7.16
부동산임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52,157	2.71	1.62	3.92

자료: 저자 작성

- 아래에서는 총수입금액 구간에 따른 신고소득률 평균을 살펴봄<sup>92)</sup>
  - 전체 표본을 이용할 경우 평균 신고소득률은 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 구간에서 25% 수준이고, 1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15% 이하로 크게 낮아짐
    - 신고소득률은 총수입금액이 커질수록 계속 낮아지다가 26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

92) 여기에서는 제도 도입 후 행태 변화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고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귀속 연도 2006~2010년 자료만 이용함

- 제1호와 제2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남
  - 신고소득률이 1억원 미만 구간에서 높고 그다음 구간에서부터 크게 감소함
- 제3호에서는 신고소득률이 1억원 이상 구간에서도 크게 감소하지 않음
  - 6억원 미만 구간까지 20% 정도를 유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함

〈표 IV-7〉 총수입금액별 신고소득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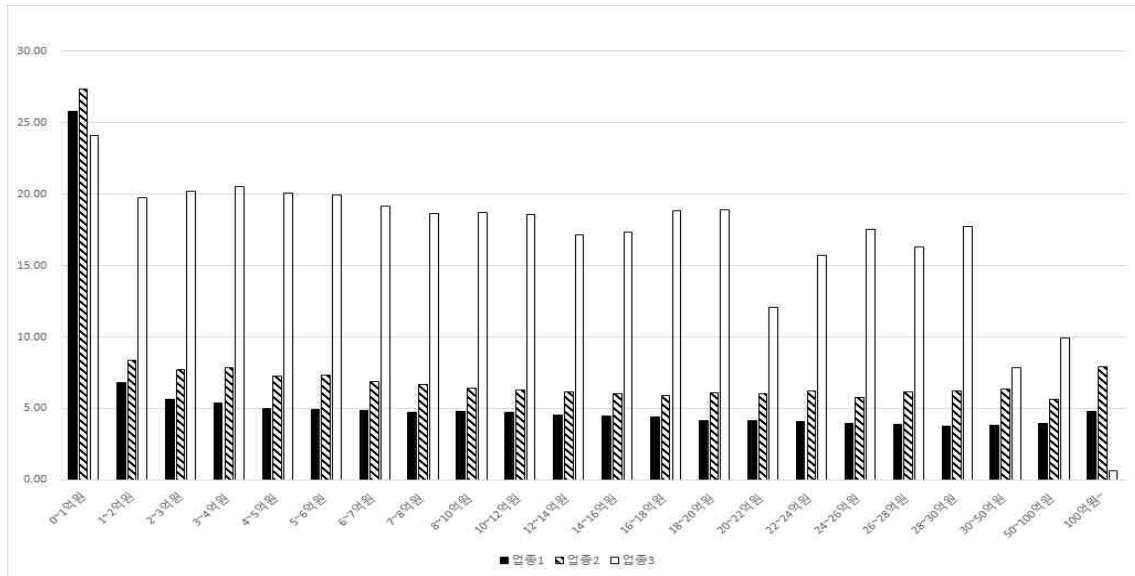
(단위: %)

총수입금액 구간	전체	제1호	제2호	제3호
0원 이상 1억원 미만	25.52	25.83	27.36	24.13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4.42	6.82	8.39	19.75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41	5.62	7.71	20.2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9.93	5.36	7.84	20.50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48	4.99	7.29	20.11
5억원 이상 6억원 미만	7.77	4.93	7.35	19.94
6억원 이상 7억원 미만	7.04	4.86	6.89	19.15
7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56	4.74	6.70	18.65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19	4.78	6.45	18.73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5.76	4.76	6.31	18.61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5.51	4.56	6.19	17.13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5.33	4.45	6.03	17.33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5.33	4.40	5.91	18.87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23	4.17	6.09	18.88
20억원 이상 22억원 미만	5.03	4.16	6.01	12.06
22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5.09	4.05	6.23	15.69
24억원 이상 26억원 미만	4.87	3.95	5.77	17.52
26억원 이상 28억원 미만	4.91	3.89	6.17	16.33
28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97	3.72	6.25	17.76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67	3.84	6.38	7.8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67	3.96	5.63	9.93
100억원 이상	5.17	4.77	7.90	0.6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 총수입금액별 신고소득률 평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신고소득률은 세부담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sup>93)</sup>
  - <표 IV-8>에서 각 기준금액의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 총수입금액이 높아질수록 신고소득률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대로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부담세액이 증가할수록 신고소득률도 상승함을 알 수 있음

<표 IV-8> 신고소득률의 분포

(단위: %)

총수입금액 분위수	분위별 평균 신고소득률	부담세액 분위수	분위별 평균 신고소득률
1분위	27.85	1분위	8.84
2분위	17.02	2분위	8.41
3분위	12.77	3분위	8.24
4분위	10.32	4분위	8.29
5분위	9.38	5분위	8.77
6분위	8.25	6분위	9.45
7분위	7.14	7분위	10.21
8분위	6.52	8분위	11.61
9분위	6.18	9분위	14.33
10분위	5.91	10분위	23.20

자료: 저자 작성

93) 업종별 신고소득률 분포는 [부도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3. 효과성 분석 결과

#### 가. 세액공제의 세부담 경감 효과

- 동 제도상 세액공제액 자체의 기초통계량은 앞 절의 <표 IV-3>에서 요약함
  - 전체 표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평균공제액은 12만원 수준임
  - 전체 표본 중 동 제도의 수혜 관측치는 총 104,569개이며, 수혜자들로만 평균 공제액을 다시 산출하면 약 99.6만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동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평균 수혜액은 10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이 세부담을 얼마나 경감해 주는지를 보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경감비율’이라고 표현함)을 사용함
  - 경감비율은 동 제도의 세액공제액이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됨
    - 다른 공제제도와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종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값인 산출세액을 분모로 사용함
  - 경감비율로 활용하기 위해 동 제도의 세액공제액을 최종부담세액으로 나눌 경우, 이미 각종 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 경감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
  -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경감비율이 1을 초과할 경우에는 1로 일괄 지정함
    - 공제감면은 납부할 세금의 범위에서만 적용되므로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산출세액까지만 공제되는 것을 반영함
  
- 전체 표본에 대하여 평균 경감비율은 약 0.9%으로 나타남
  - 실제 세액공제 수혜자(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이 0보다 큰 경우)만을 계산하면 평균 경감비율은 약 7.2%임(<표 IV-9> 참조)
    -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공제감면 차감 전 산출세액에서 7% 이상의 세금이 경감됨을 의미함

<표 IV-9> 경감비율 기초통계량

(단위: 개, %)

표본 조건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 \leq \text{경감비율} \leq 1$	807,002	0.93	4.75	0	1
$0 < \text{경감비율} \leq 1$	104,393	7.22	11.37	3.05e-7	1

자료: 저자 작성

- 경감비율은 납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사업자의 매출이 클수록 동 제도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동 제도의 대상을 총수입금액의 규모로 결정하기 때문으로 평가됨
  - 부담세액과의 상관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부담세액이 클수록 경감비율은 약하게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IV-10> 경감비율의 분포

(단위: %)

총수입금액 분위수	분위별 평균 경감비율	부담세액 분위수	분위별 평균 경감비율
1분위	0.46	1분위	2.50
2분위	0.10	2분위	0.52
3분위	0.13	3분위	0.78
4분위	0.20	4분위	0.80
5분위	0.42	5분위	0.82
6분위	0.65	6분위	0.85
7분위	1.00	7분위	1.10
8분위	1.25	8분위	1.10
9분위	1.81	9분위	1.06
10분위	3.06	10분위	0.63
전체	0.93	전체	0.93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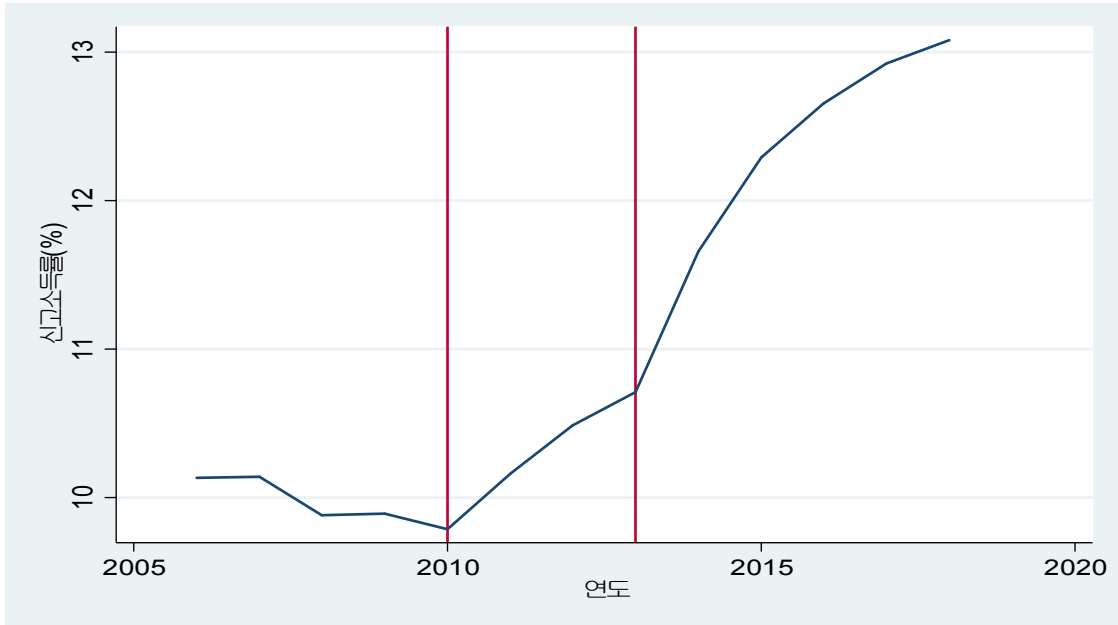
- 한편, 산업군별 평균 경감비율을 산출한 결과, 동 제도 적용대상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각호로 분류한 산업 중 제2호에 분류된 산업군에서 경감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각호별 산업군의 평균 경감비율은 제1호 0.86%, 제2호 1.13%, 제3호 0.62%로 계산됨
  - 제2호의 산업에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이 포함됨
  
- 타당성 분석에서 설명했듯이 과세당국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동 세액공제 외에도 성실신고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확인비용 순수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제시한 자료<sup>94)</sup>에 따르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200만원의 수입료를 지불할 경우 순수 자기비용 부담액은 13만원에 불과함
    - 이때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나. 신고소득률의 변화 여부

- [그림 IV-2]를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고소득률의 연도별 추세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표본 전체의 신고소득률 평균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크게 증가함
    - 평균 신고소득률은 2010년에는 10% 미만이지만, 2018년에는 13%를 넘음
  - 또한, 총수입금액 기준이 인하된(제도 대상이 확대된) 시점인 2013년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94)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2/02/20120210133730.html>, 검색일자: 2020. 8. 4.

[그림 IV-2] 신고소득률 추세



자료: 저자 작성

- [부도 2]부터 [부도 5]에서는 업종 및 총수익금액 규모별로 신고소득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11년 제도 도입 시 정책대상자가 된 이들의 신고소득률은 제도 도입 직후 상승하기 시작함
  - 2013년 제도 확대 개편으로 정책대상자가 된 이들의 신고소득률은 개편 직전까지는 이전의 추세를 따르다가 개편 직후 상승하기 시작함
  
- 관심 제도와 신고소득률의 관계를 더 엄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세 번의 정책 변화 시점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함
  1. 동 제도가 도입된 2011년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인 2010년과 비교하여 실험군(동 제도의 수혜 집단)과 대조군(총수입금액 규모가 유사한 비수혜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함
  2. 동 제도가 1차로 대상 기준금액을 낮춘 2014년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인 2013년과 비교하여 실험군(동 제도의 수혜 집단)과 대조군(총수입금액 규모가 유사한 비수혜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함

3. 동 제도가 2차로 대상 기준금액을 낮춘 2018년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인 2017년과 비교하여 실험군(동 제도의 수혜 집단)과 대조군(총수입금액 규모가 유사한 비수혜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함

□ 개별 사업자의 정책시행 전후 행태를 비교하기 위해 패널자료에 대한 이중차분법으로 분석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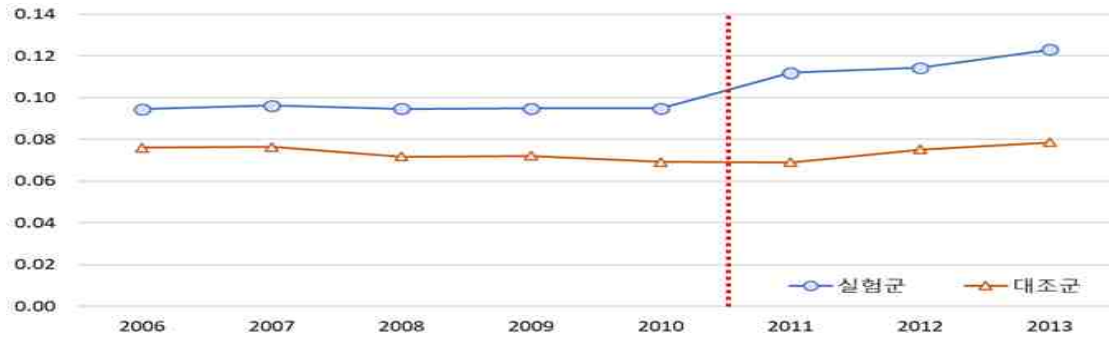
- 다년도 자료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할 때 패널자료로 개체별 구분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과 각 연도별 자료를 서로 다른 개체로 인식하여 분석하는 방법(pooled OLS)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개별 사업자의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행태 변화 여부를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패널자료기법으로 분석함
  - 패널자료기법도 다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함
  - 패널자료에 대한 이중차분법을 고정효과모형으로 적용할 경우, 실험군 더미가 시간에 대해 불변하기 때문에 공선성이 나타나 모형에서 생략해야 함
  - 그럼에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병행하여 임의효과모형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함
- 한편, 정책 도입시점과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수 개년에 대하여 패널자료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정책 적용시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정책의 효과가 약화됨을 감안하여 정책 효과의 직접적인 변화가 가장 클 직전연도와 시행연도 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춤
  - 모형에 연도별 정책 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전연도와 시행연도만을 대상으로 해도 충분히 큰 표본크기를 확보하여 직전과 직후의 비교에 집중함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에 앞서, 이중차분법이 정책의 순효과를 식별하여 추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추세가정(common trend assumption)의 성립 여부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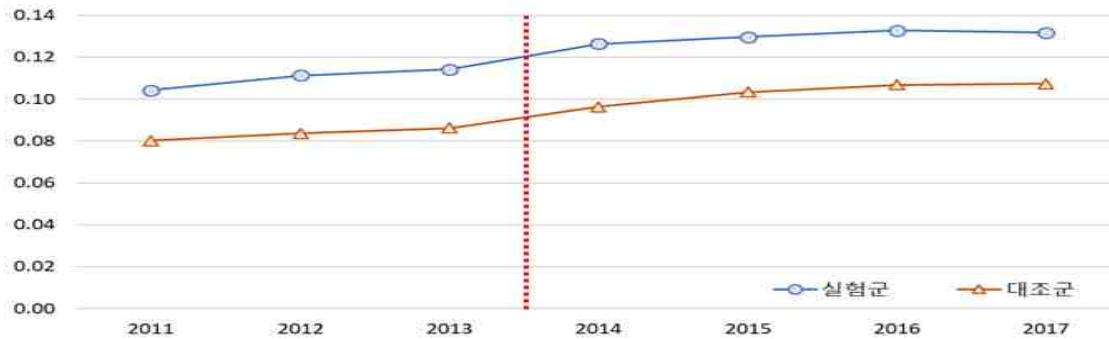
- 공통추세가정은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이라고도 하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신고소득률)가 정책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는 전제임
    - 이 전제가 성립되어야 이중차분법에서 추정된 계수가 정책의 진정한 순효과로 해석될 수 있음
  - 분석 시점의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전후(2006~2013년)와 제도의 1차 개정 전후(2011~2017년) 시기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신고소득률 연도별 추세를 살펴봄
    - 제도의 2차 개정 효과에 대해서는 이중차분법을 2017년과 2018년 2개년만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나 공통추세를 그래프로 살펴보기에는 기간이 짧아 추세 그래프는 따로 보이지 않음
    -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와 1차 개정시기에 모두 공통추세가정이 만족된다면, 2차 개정시기에도 유사한 공통추세를 가질 것으로 미루어 예상할 수 있음
- 두 시기에 대한 평균 신고소득률의 추세는 아래 [그림 IV-3]에서 확인하듯이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사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제도 도입 전에는 거의 평행하게 유지되던 두 집단의 평균 신고소득률이 제도 도입으로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도입 전인 2006~2010년 두 집단의 평균 신고소득률 차이는 약 2% 수준으로 유지됨
    - 제도 도입 후 두 집단의 평균 신고소득률 격차는 4% 내외로 확대됨
  - 또한, 1차 개정 시기 전후로는 두 집단 간 평균 신고소득률의 추세가 개정과는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1차 개정에 따른 제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음
  - 두 집단의 평균 신고소득률 추세가 제도 도입 전 혹은 개정 전에 안정적으로 평행한 흐름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추세가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V-3] 시기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신고소득률 추세

<위: 제도 도입(2011년) 전후>



<아래: 제도 1차 개정(2014년) 전후>



자료: 저자 작성

□ 첫 번째 시점(2011~2012년)에 대한 분석 결과, 2011년 동 제도의 도입으로 수혜 집단은 신고소득률이 1.4%p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남(<표 IV-11> 참조)

○ 이는 정책의 순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임

<표 IV-11> 제도 도입에 의한 신고소득률 변화 추정 결과

변수	계수추정값	표준오차	z값	P > z
정책시행·실험군	0.014***	0.0013	11.09	0
실험군 더미	0.028***	0.0012	23.41	0
정책시행 더미	-0.002**	0.0009	-2.31	0.021
상수항	0.071***	0.0007	98.09	0
sigma_u	0.078		-	
sigma_e	0.072		-	
rho	0.538		-	
R-squared:	-	# of observations		102,104
within	0.0025	# of groups		25,273
between	0.0233	Wald chi2(3)		847.25
overall	0.0157	Prob > chi2		0

주: 계수추정값 우측에 붙은 \*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두 번째 시점(2013~2014년)에 대한 분석 결과, 2014년 동 제도의 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규로 편입된 수혜 집단은 신고소득률이 0.2%p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남(<표 IV-12> 참조)

○ 이는 정책의 순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임

<표 IV-12> 제도대상 기준 1차 개정에 의한 신고소득률 변화 추정 결과

변수	계수추정값	표준오차	z값	P > z
정책시행·실험군	0.002***	0.0007	2.64	0.008
실험군 더미	0.027***	0.0020	13.03	0
정책시행 더미	0.018***	0.0003	66.49	0
상수항	0.083***	0.0006	134.77	0
sigma u	0.090		-	
sigma e	0.039		-	
rho	0.840		-	
R-squared:	-	# of observations		120,575
within	0.0534	# of groups		26,708
between	0.0132	Wald chi2(3)		5,639.07
overall	0.0158	Prob > chi2		0

주: 계수추정값 우측에 붙은 \*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세 번째 시점(2017~2018년)에 대한 분석 결과, 2018년 동 제도의 대상 기준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하향 조정에 따라 신규로 편입된 수혜 집단은 신고소득률이 0.6%p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남(<표 IV-13> 참조)

○ 이는 정책의 순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임

<표 IV-13> 제도대상 기준 2차 개정에 의한 신고소득률 변화 추정 결과

변수	계수추정값	표준오차	z값	P > z
정책시행·실험군	0.006***	0.0007	8.41	0
실험군 더미	-0.011***	0.0013	-8.16	0
정책시행 더미	-0.00012	0.0004	-0.28	0.776
상수항	0.107***	0.0007	161.04	0
sigma u	0.098		-	
sigma e	0.040		-	
rho	0.855		-	
R-squared:	-	# of observations		60,856
within	0.0039	# of groups		34,612
between	0.0010	Wald chi2(3)		138.21
overall	0.0013	Prob > chi2		0

주: 계수추정값 우측에 붙은 \*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각 시점에 대한 패널 이중차분법을 고정효과모형으로도 실행한 결과, 임의 효과모형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옴
  - 2차 개정의 효과는 고정효과모형에서 임의효과모형보다 0.1%p만큼 소폭 크게 추정되었으나 제도 도입의 효과나 1차 개정의 효과는 두 모형이 거의 동일함
  - 두 모형의 제도 효과 추정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임의효과의 결과를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하더라도 모형 선택에 따른 이슈에서 자유로움
    - 일반적으로는 임의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보다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정효과모형이 선호되지만 두 모형의 결과가 거의 동일할 경우에는 어떤 모형을 선택했느냐로 모형 적합성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음

<표 IV-14>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간 정책 효과 추정계수 값 비교

분석 시점	임의효과	고정효과
제도 도입	0.0142***	0.0136***
1차 개정	0.0018***	0.0020***
2차 개정	0.0062***	0.0073***

주: 1. 계수추정값 우측에 붙은 \*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2. 각 모형에서의 추정계수 값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저자 작성

- 각 시점별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를 보면, 동 제도의 도입과 대상 기준 개정에 따라 새로 정책대상자로 편입된 사업자들의 신고소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소득률이 평균적으로 11%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점별로 0.2~1.4%p 증가한 것은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특히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 집단의 1.4%p 증가분은 신고소득률을 10%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임
  - 다만, 이러한 정책효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결합된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동 세액공제제도가 함께 도입되었고, 대상 기준금액의 변화 또한 두 제도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중차분법으로도 두 제도의 순효과를 식별할 수는 없음

- 동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세수 증가와 조세지출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자료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고소득률이 1% 증가할 때 결정세액은 0.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때 분석자료가 패널자료임을 고려하여 고정모형을 활용하였으나 신고소득률의 외생적인 변이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 앞에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고소득률이 12.7%(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정세액은 약 11%(=12.7x0.8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동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정책대상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과 결정세액의 평균은 각각 95만원과 7,176만원임
    - 결정세액 증가분은 평균 789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균세액공제금액보다 큼
  - 앞에서 동 제도의 1차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소득률이 1.8%(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정세액은 1.6%(=1.8x0.8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1차 개정이 적용된 해에 새로 정책대상자로 포함된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과 결정세액 평균은 각각 86만원과 2,938만원임
    - 결정세액 증가분은 평균 47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균세액공제금액보다 작음
  - 앞에서 동 제도의 2차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소득률이 5.5%(0.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정세액은 4.7%(=5.5x0.8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차 개정이 적용된 해에 새로 정책대상자로 포함된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과 결정세액 평균은 각각 104만원과 2,270만원임
    - 결정세액 증가분은 평균 108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균세액공제금액과 유사함
  - 요약하자면,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조세지출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 및 2차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조세지출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평균치를 이용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강건성 확인) 지금까지 진행한 이중차분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실 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주변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거한 후 이중차분법(DID)을 재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기본 모형과 큰 차이가 없었음
  - 기준액 주변에서는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등 사업자의 전략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업종별 기준액에서 ±1억원 범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들을 표본에서 제외하고 이중차분법을 다시 실시함
    - 사업자가 기준액을 약간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된다면 매출실적을 이월 혹은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게 실적을 조정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림 IV-4]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분포가 해당 귀속연도와 업종의 정책대상 경계선 좌측에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sup>95)</sup>
    - 동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어떤 경계선에도 분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성실확인제도 정책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자의 피터팬 증후군은 집군분석(bunching analysis)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기준액과 유사한 수준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들을 관측치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도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음
  - 기준액 주변 관측치를 제거한 후 이중차분법을 실행한 결과와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IV-15>에서 비교하고 있음
    - 제도 도입시점의 정책 효과는 기본 모형과 기준액 주변 제거 모형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와 제도의 순효과가 잘 추정되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함
    - 1차 개정에 대한 정책 효과는 기준액 주변 제거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그림 IV-4]의 하단이나 기본 모형의 정책 효과 추정값에서 보듯이 1차 개정에 따른 신고소득률 변화는 제도 도입 당시나 2차 개정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예상을 뒤엎는 반전으로 보기는 어려움
    - 2차 개정에 대한 정책 효과는 기본 모형에 비해 기준액 주변 제거 모형에서 더 작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수값이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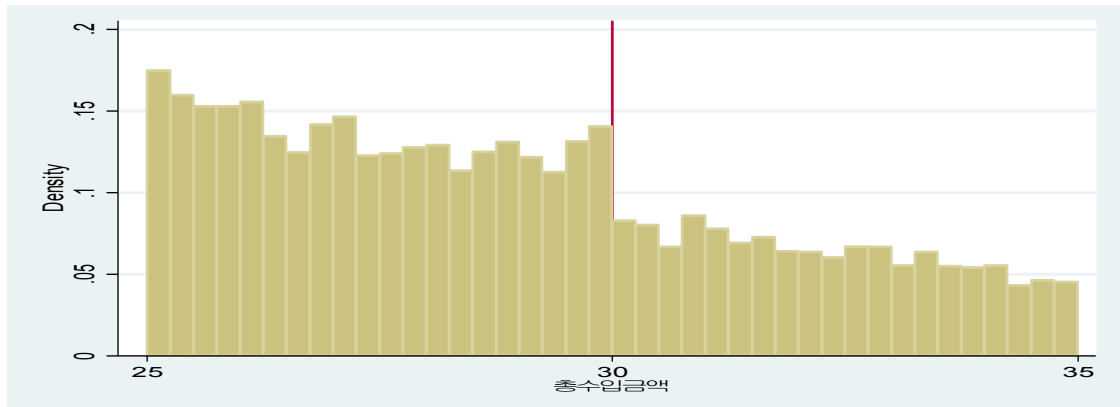
95) 부록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강건성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기준액 주변 값들을 제거하고도 제도 도입과 2차 개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신고소득률 증가 효과가 확인되어 기본 모형이 대체로 안정적인 결과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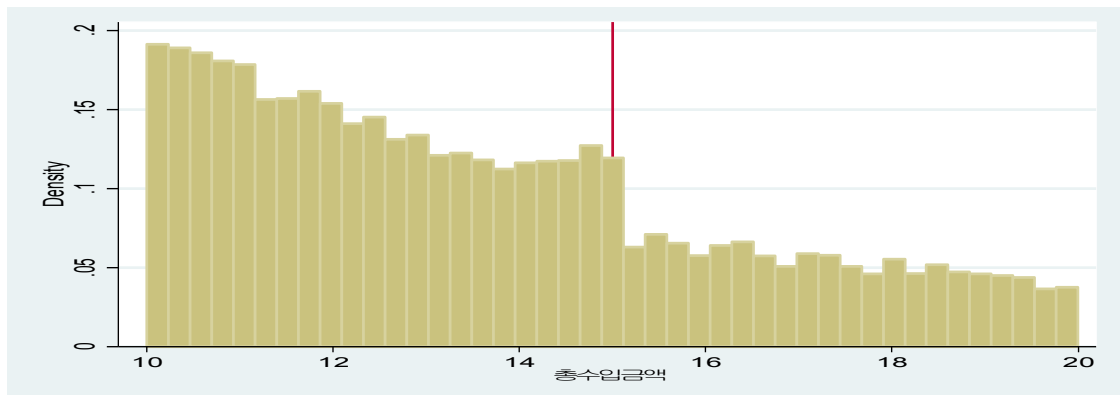
[그림 IV-4] 제도 도입 후(2011~2013) 업종별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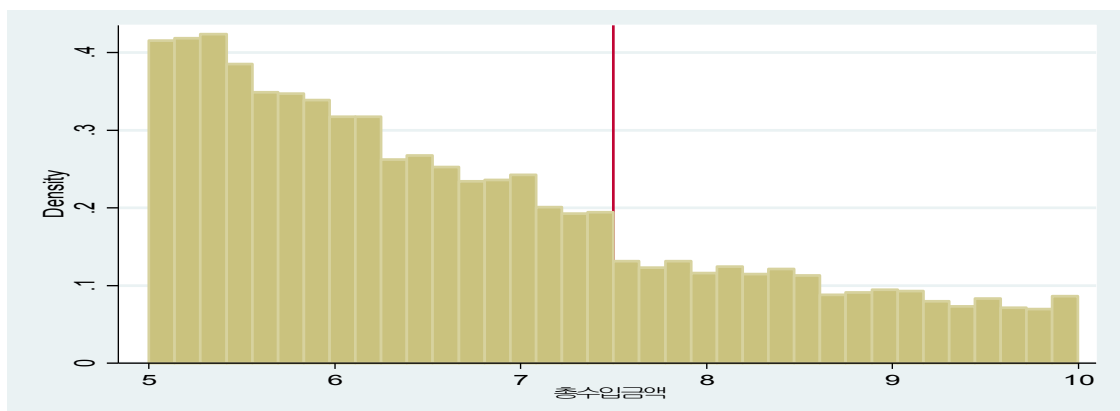
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나.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다. 부동산임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자료: 저자 작성

<표 IV-15> 강건성 확인 결과 비교

분석시점	기본 모형의 DID 계수 추정값		기준액 주변 제거 후 DID 계수 추정값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제도 도입	0.0142***	0.0136***	0.0135***	0.0129***
1차 개정	0.0018***	0.0020***	-0.0003	-0.0003
2차 개정	0.0062***	0.0073***	0.0034***	0.0050***

주: 1. 계수추정값 우측에 붙은 \*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2. 각 모형에서의 추정계수 값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저자 작성

**다. 공제범위 변경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의무자들의 행태 변화 여부**

- 마지막으로 사례분석 결과, ㉠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93명, ㉡의 경우는 943명의 사업자가 발견됨
  - 즉, 2017년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으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가 2018년도에 다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경우는 총 1,536명이며, 이 중 943명의 사업자(61.4%)는 2018년도에 다시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593명의 사업자(38.6%)는 2018년도에 신고내용을 확인함
  - 만약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확대된 것 이외에 다른 사업상의 여건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공제한도 확대로 인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공제한도 확대의 순효과로 보기에 상기 가정은 상당히 강한 전제임을 이해해야 함
  - 해당 2개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단지 비용공제 한도가 작았기 때문으로 보기에 사업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상당수 존재함
  - 사업과 관련한 거시경제 또는 시장의 여건이 해당 2개년 사이에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고, 사업자의 내부 경영여건(의사결정자, 재무상태, 종업원 관계 등)도 2개년 사이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강한 가정임

- 그러나 제도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자 대내외여건을 통제하기에는 정보의 한계도 명확함(이중차분할 비교군을 설정하기 곤란함)
- 사례분석에서 확인된 38.6%의 사업자 행태 변화는 상한(upper bound)이나 하한(lower bound)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우며, 단지 2018년 제도 변경시점 당시 기준에 신고확인을 하지 않던 사업자의 38.6%가 제도변경 이후에는 신고확인을 하였다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음(제도 효과와 제도 외적 효과가 결합된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함
  -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음
    - 하나는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 다른 하나는 동 제도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신고소득률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임
    - 마지막은 동 제도의 공제한도 확대에 의하여 기존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던 사업자들이 해당 개편에 따라 어떻게 행태를 가져갔는지를 살피는 사례분석임
  
- 동 제도로 인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는 제도 수혜자로 편입됨으로써 평균적으로 100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고, 산출세액에서 약 7% 정도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총수입금액에 따라 제도 수혜자가 결정되어 총수입금액이 클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큰 경향을 보임
  
- 동 제도로 인한 사업자의 신고소득률 변화 여부는 제도 수혜자가 유의미하게 신고소득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도입시점과 두 차례의 대상 기준금액 개정시점에 따라 신규 수혜자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수혜자들의 신고소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함

-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조세지출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 및 2차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조세지출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평균치를 이용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분석에서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편 직전연도에 신고내용 확인대상이면서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 1,536명 중 38.6%인 593명 사업자가 한도 개편 직후연도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이러한 결과를 공제한도 확대만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세 가지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들은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세금을 공제받음으로써 평균 100만원 수준의 비용부담 개선 효과가 있음
  - 동 제도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신고소득률을 높이게 하는 인과효과가 통계적으로 인정되며, 이는 사업자들의 필요경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동 제도가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계량분석에서 추정된 인과효과는 동 제도(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제도의 결합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례분석 결과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들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개연성이 높음을 암시함



## V. 결론





## V. 결론

- 성실신고 및 납세순응은 세수입, 효율비용, 세부담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주요한 관심사업
  - (세수입) 탈세 및 조세회피는 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안종석·강성훈·오종현(2017)에 따르면 주요 세목의 tax gap 총합은 2011년 기준으로 25조 5천억~26조 8천억원에 이릅니다
  - (효율비용) 납세불순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비용에는 납세자가 탈세 및 조세회피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 과세당국이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치르는 행정비용 등 자원배분이 왜곡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
  - (형평성)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세부담 증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이 문제가 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절감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도에 신설되었으나, 성과평가 없이 장기간 운영되었음
  - 특히 감면액 규모가 상당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조세지출 규모가 2012년에는 502억원 수준이었으며, 2018년에는 1,160억원에 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동 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무대리 비용부담을 절감하여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정착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효과성 분석)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 것으로 보임
  - (타당성 분석) 제도 목적의 적절성 및 정부 개입의 필요성 모두 인정되며, 제도 보완을 통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문헌

- 구재이,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48호, 한국법제연구회, 2015, pp. 91~142.
- 김성우·김용수·노희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7, pp. 155~190.
- 류덕현·박기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 박인목·홍정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2, pp. 189~228.
- 박주영·김예나·전병욱,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4, pp. 139~169.
-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안종석·강성훈·오종현, 『소득세 Tax Gap 추정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윤태화·정해욱,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과 신고소득률 간의 관계분석」,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7, pp. 195~219.
- 정지선·구자은, 「취득가격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5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p. 253~296.
- Australian Government Inspector-General of Taxation, *Review into aspects of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s use of compliance risk assessment tools*, 2013.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nnual Compliance Arrangements-what you need to know,” 2018.
- The Netherlands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Horizontal monitoring within the medium to very large businesses segment*, 2010.
- 『조세일보』, 「[성실신고확인제-세무사 업계는 지금] ② 납세자 “추가 수수료 못 쥐”... 세무사 “최소 200만원 받아야”」,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2/02/20120210133730.html>, 검색일자: 2020. 8. 4.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38>, 검색일자: 2019. 12. 19.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Manuals, 4.51.8 Compliance Assurance Process(CAP) Examinations, [https://www.irs.gov/irm/part4/irm\\_04-051-008#idm139704840587840](https://www.irs.gov/irm/part4/irm_04-051-008#idm139704840587840), 검색일자: 2019. 12. 27.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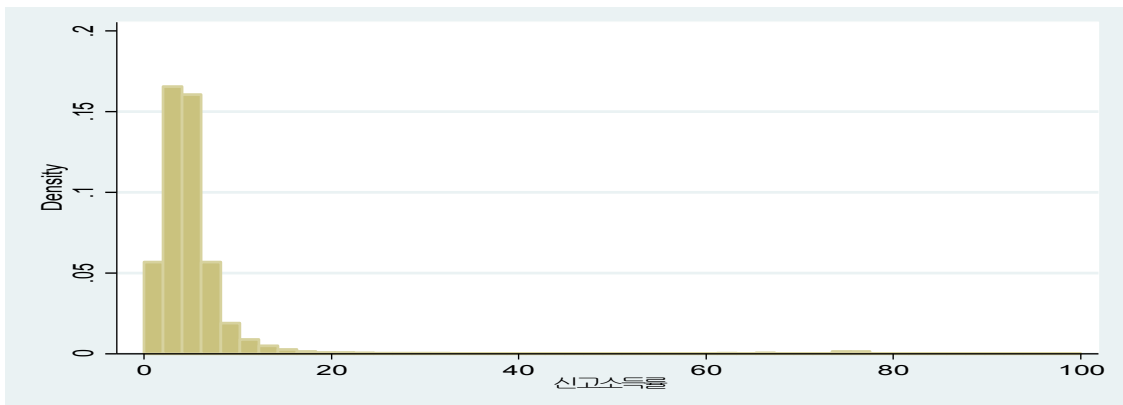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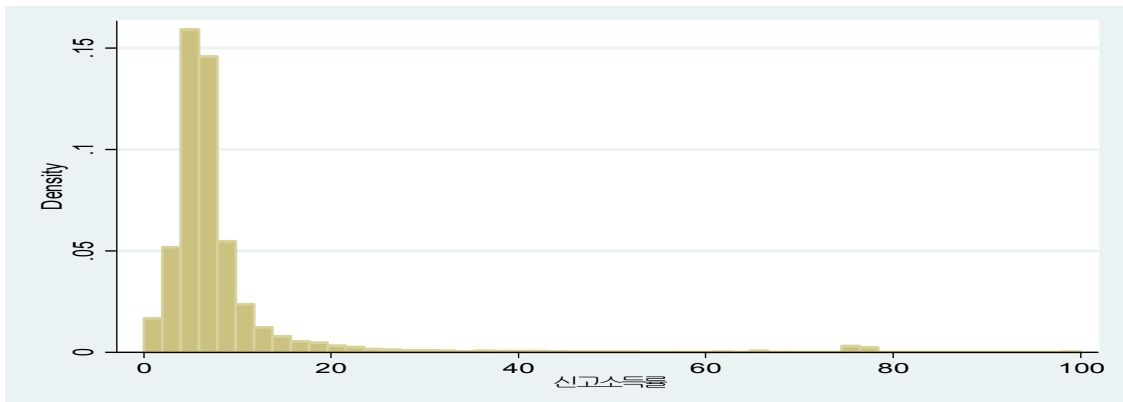
# 부 록

## [부도 1] 업종별 신고소득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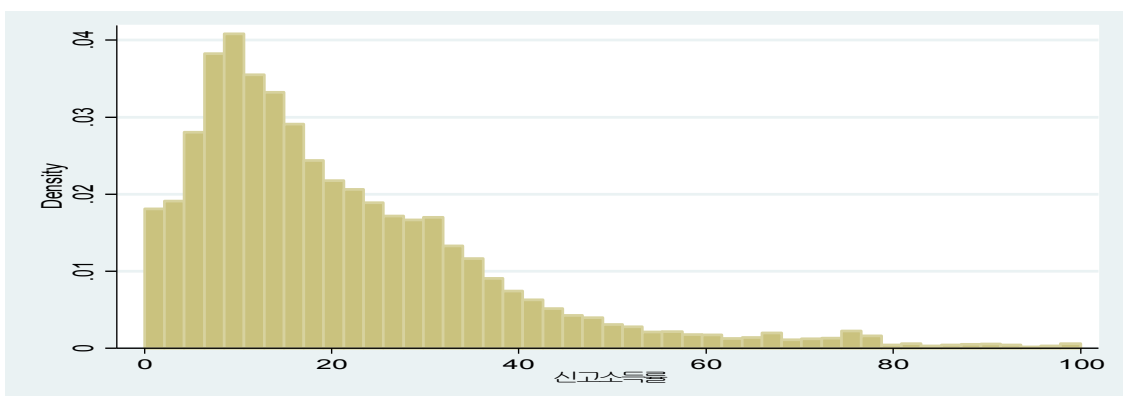
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나.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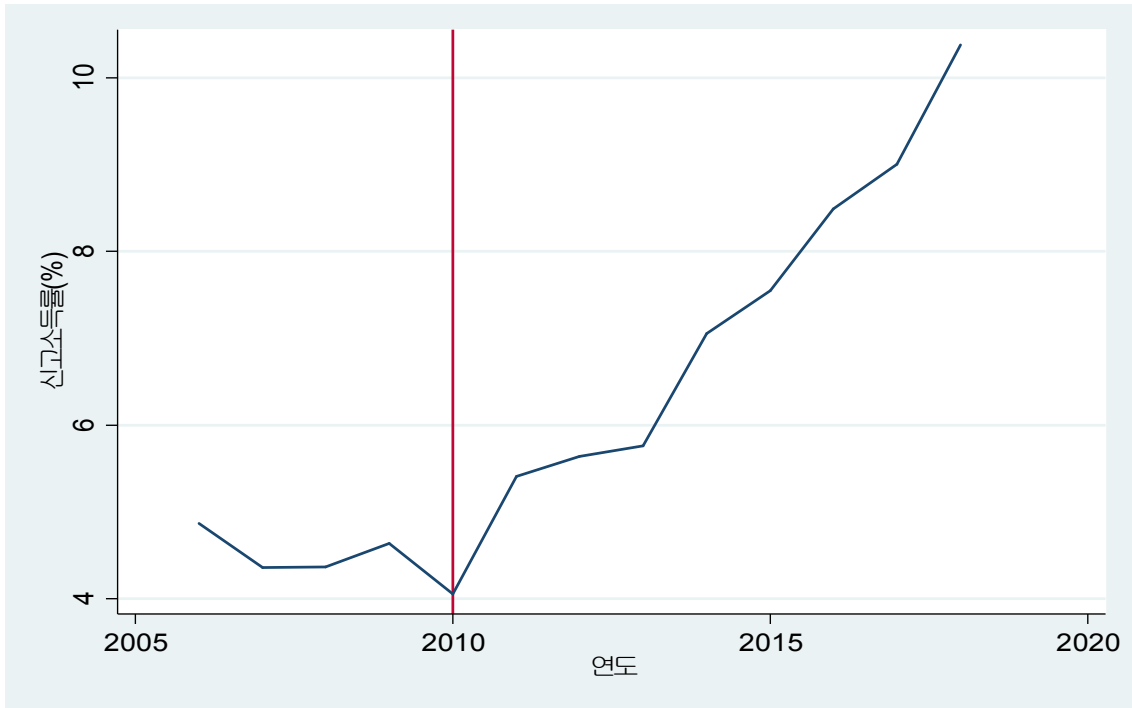
다. 부동산임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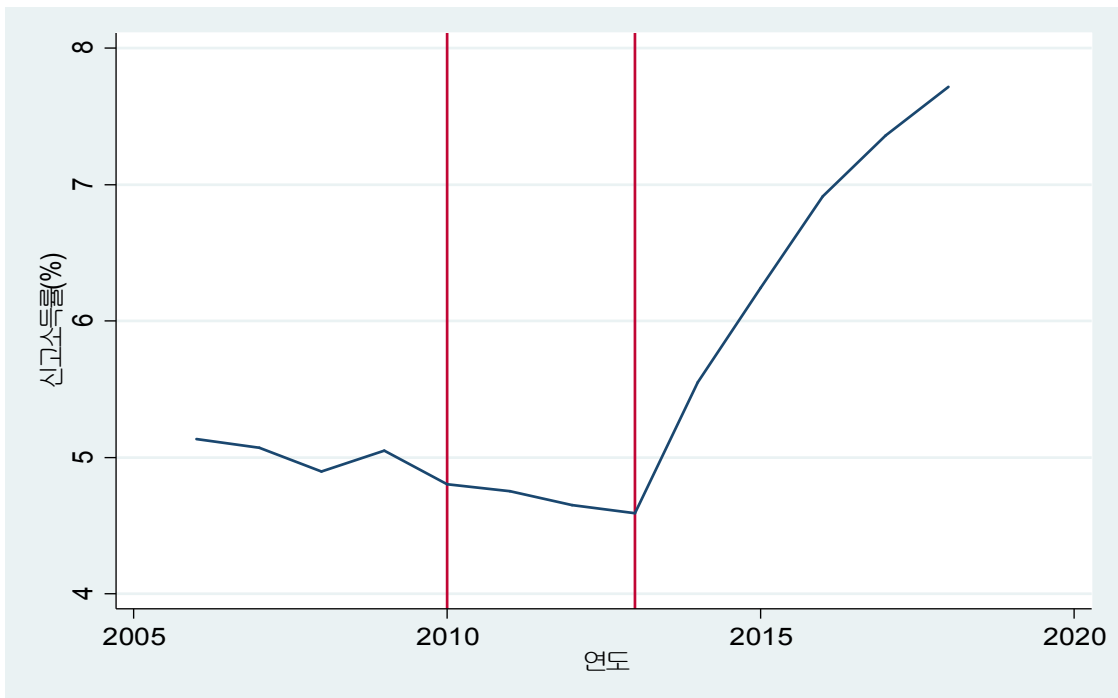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2] 신고소득률 추세(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가. 총수입금액 30억원 이상(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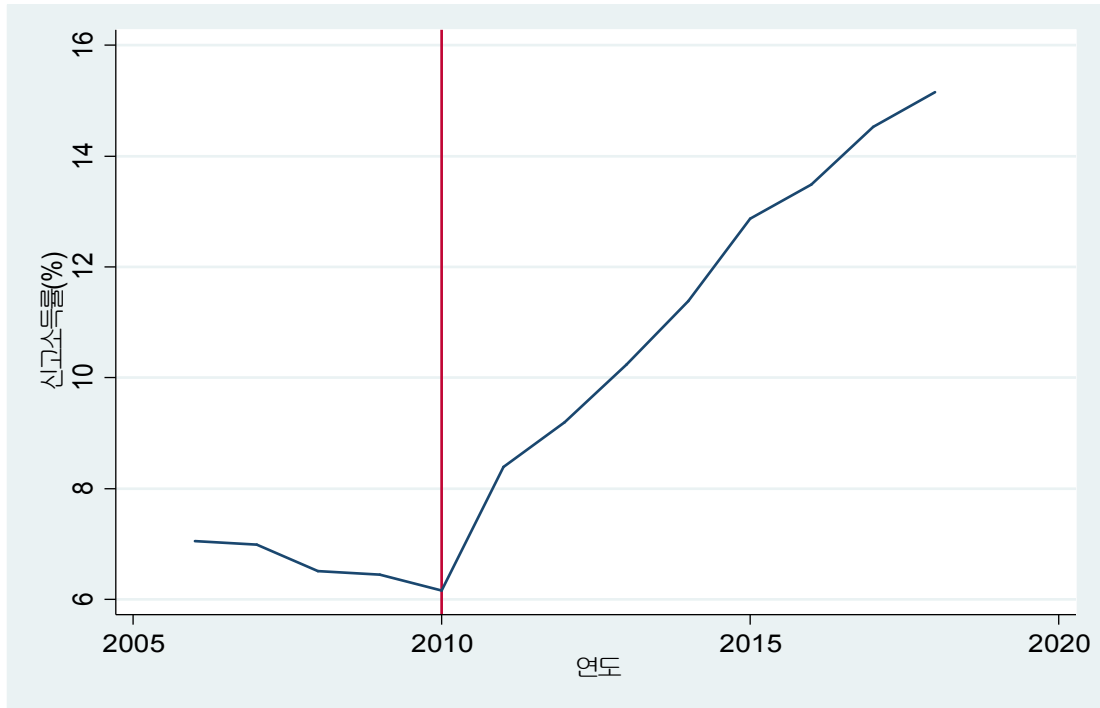
나. 총수입금액 15~30억원(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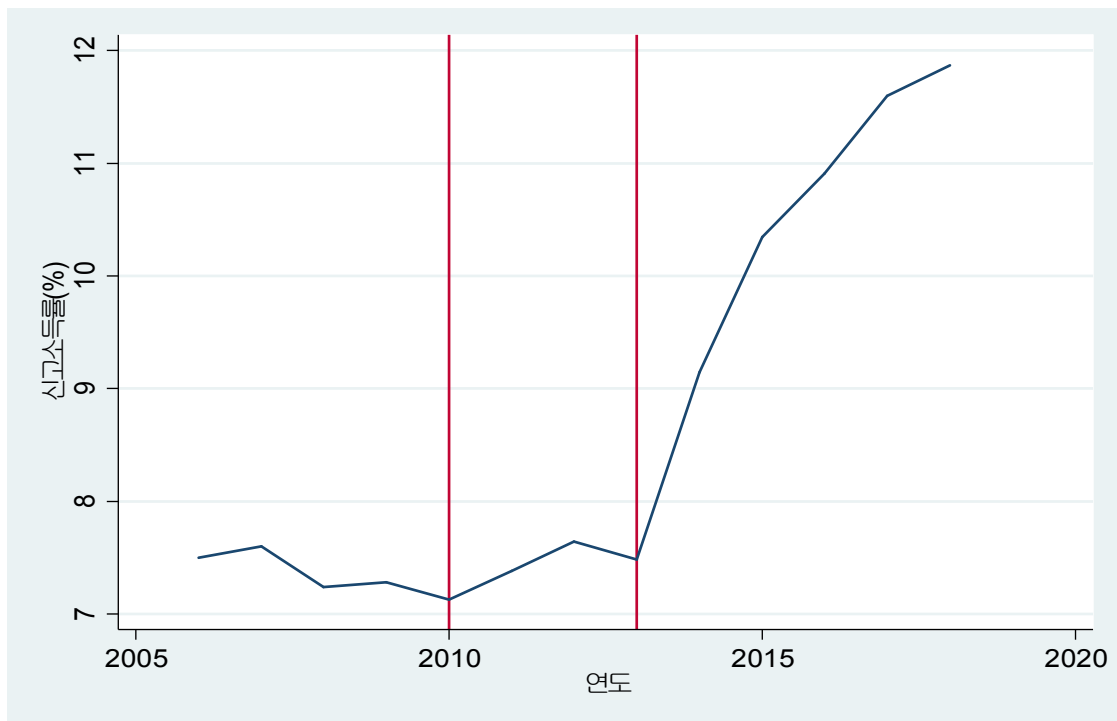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3] 신고소득률 추세(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가. 총수입금액 15억원 이상(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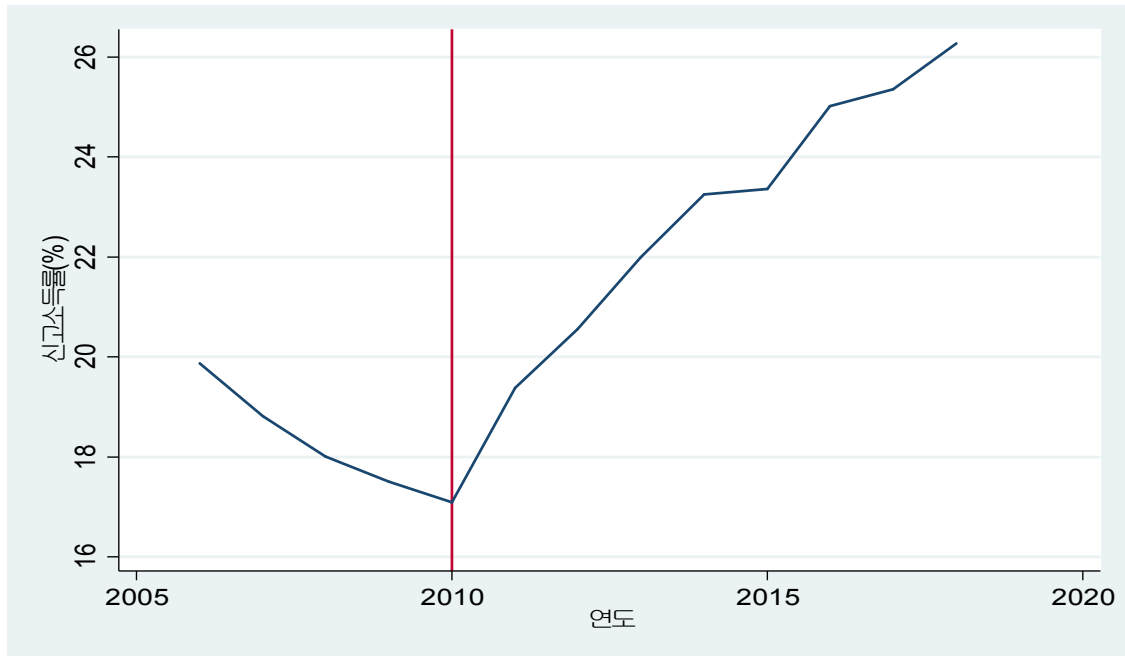


나. 총수입금액 10~15억원(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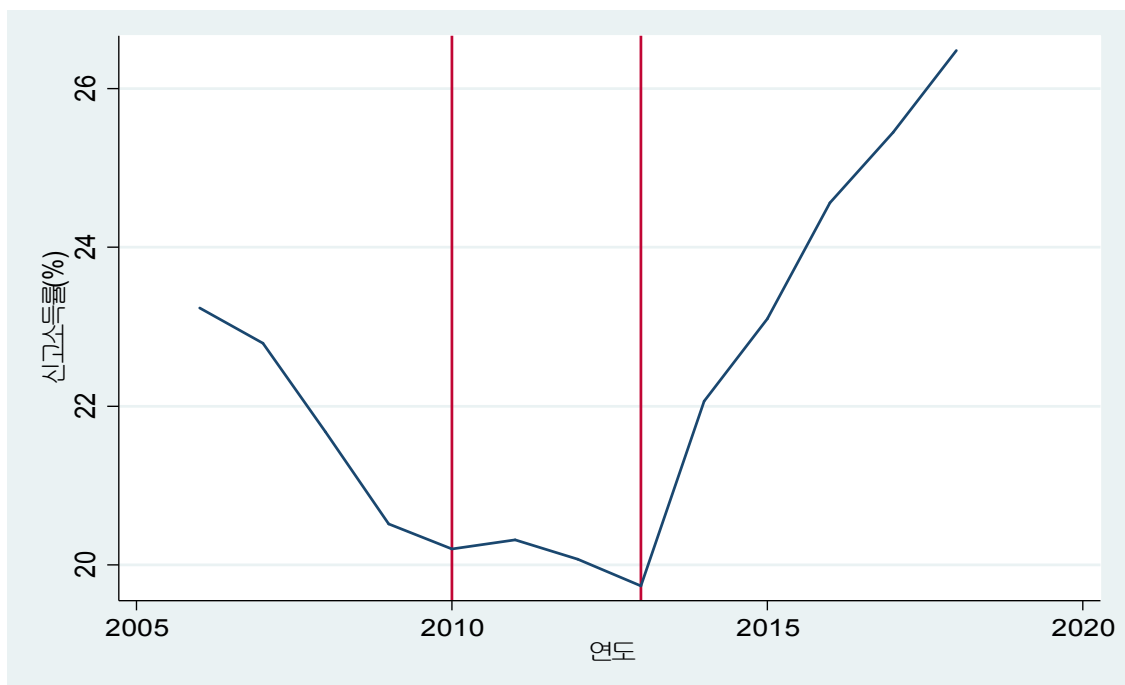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4] 신고소득률 추세(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가. 총수입금액 7.5억원 이상(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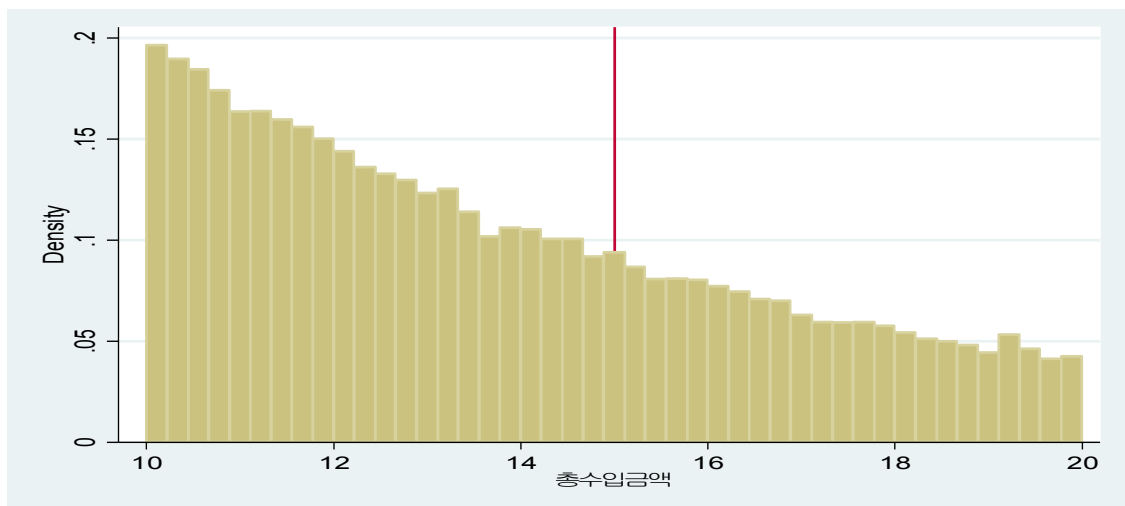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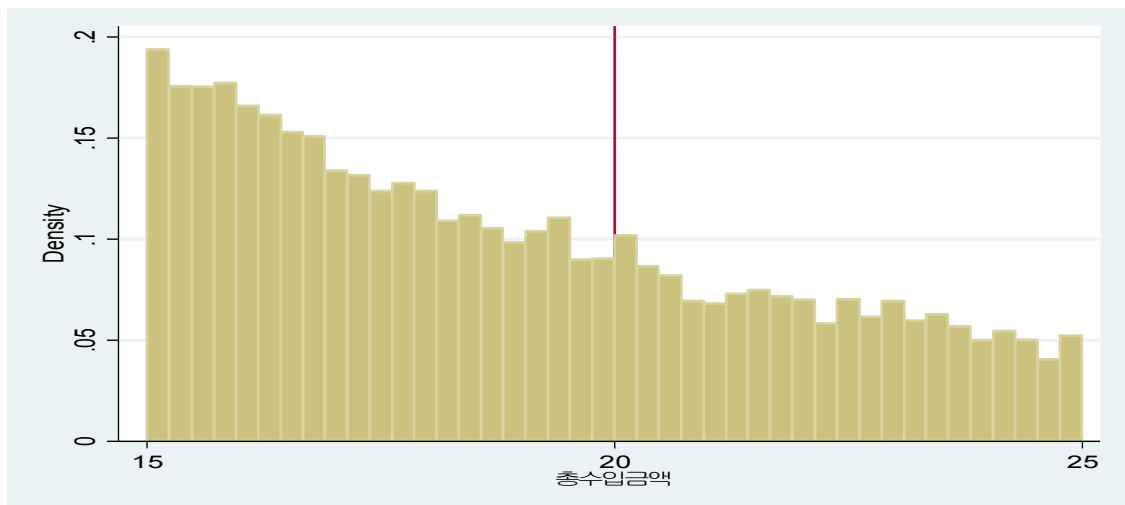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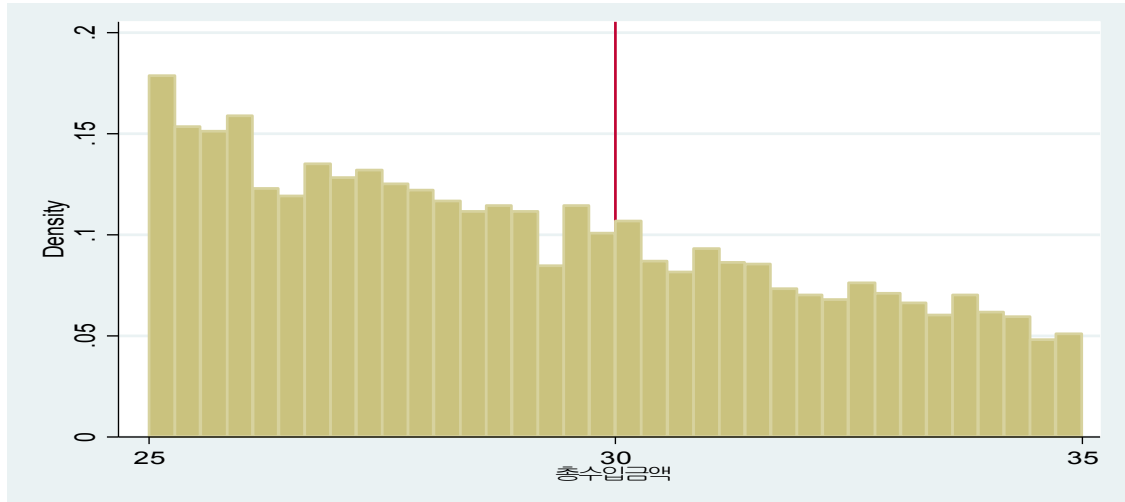
나. 총수입금액 5~7.5억원(2013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부도 5]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제도 도입 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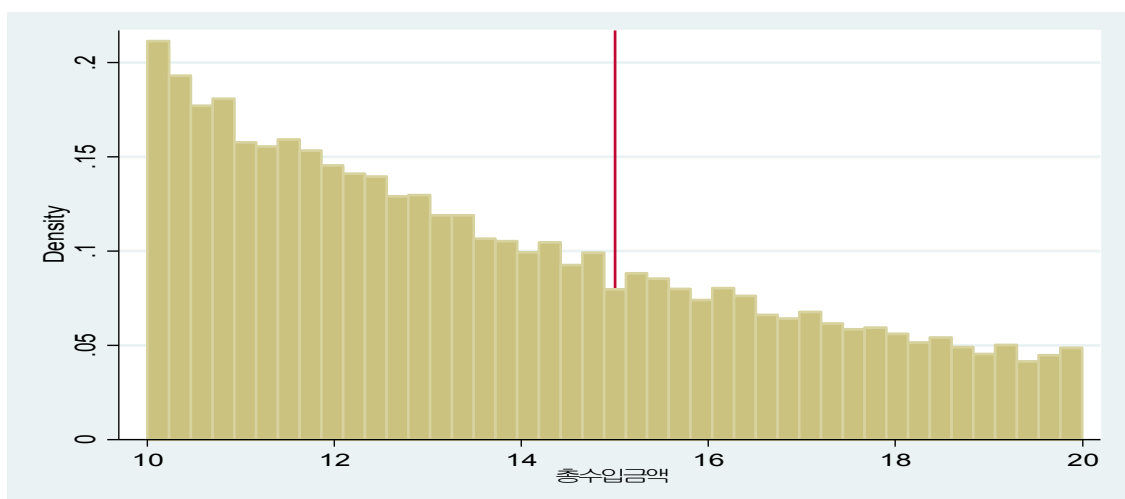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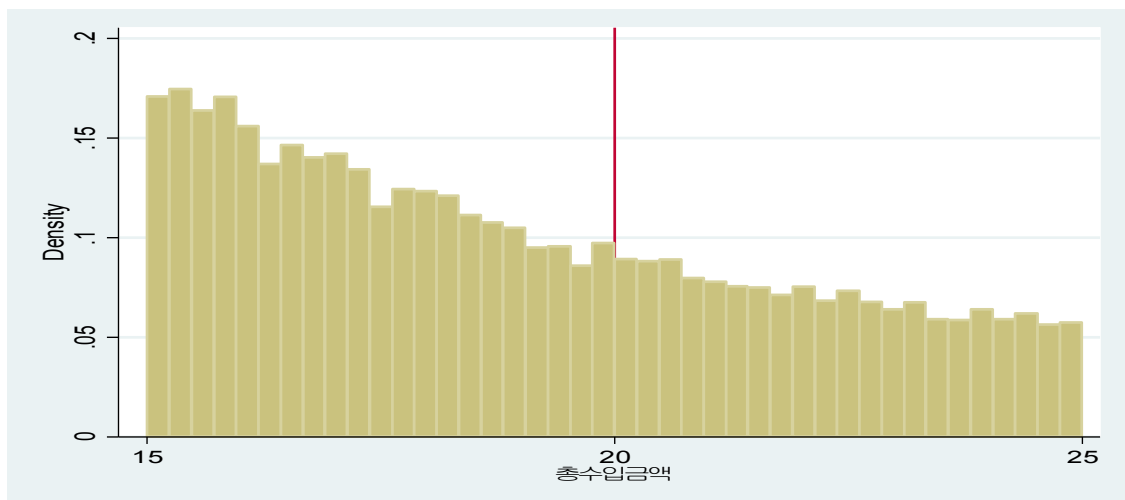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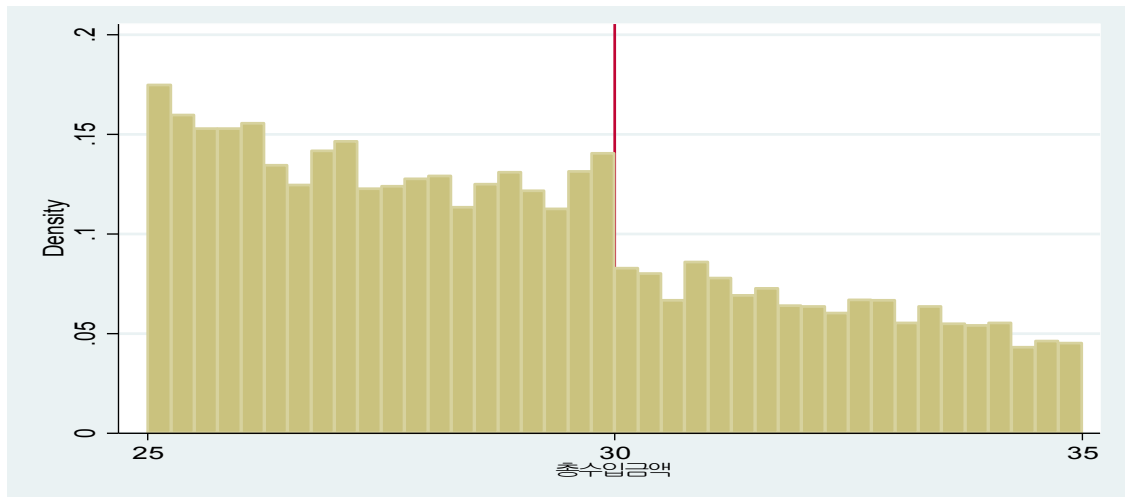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6]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2011~2013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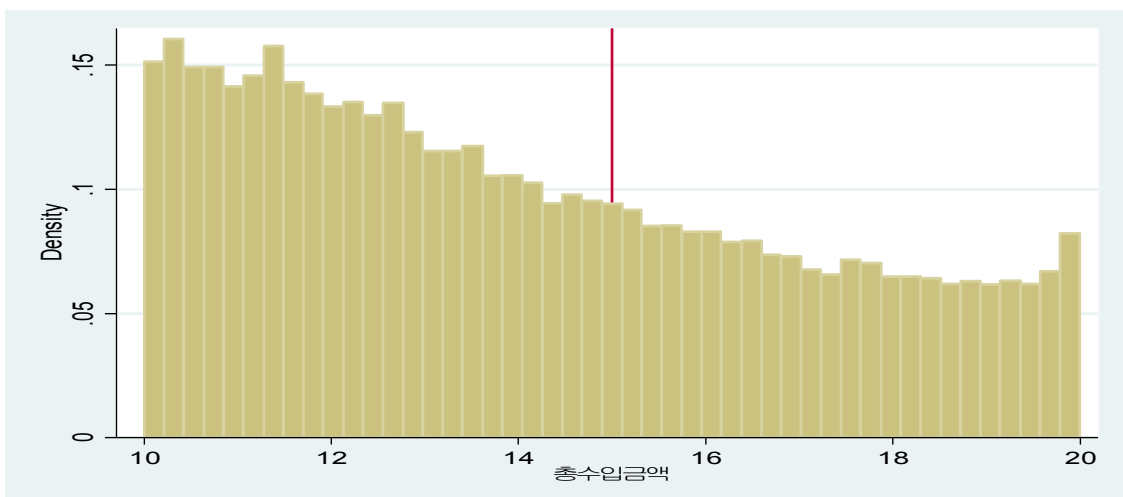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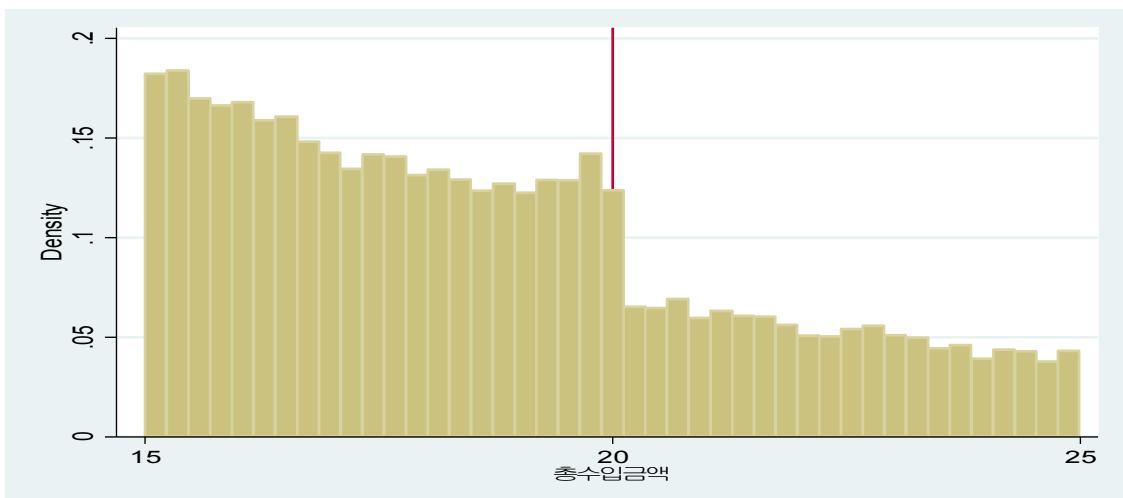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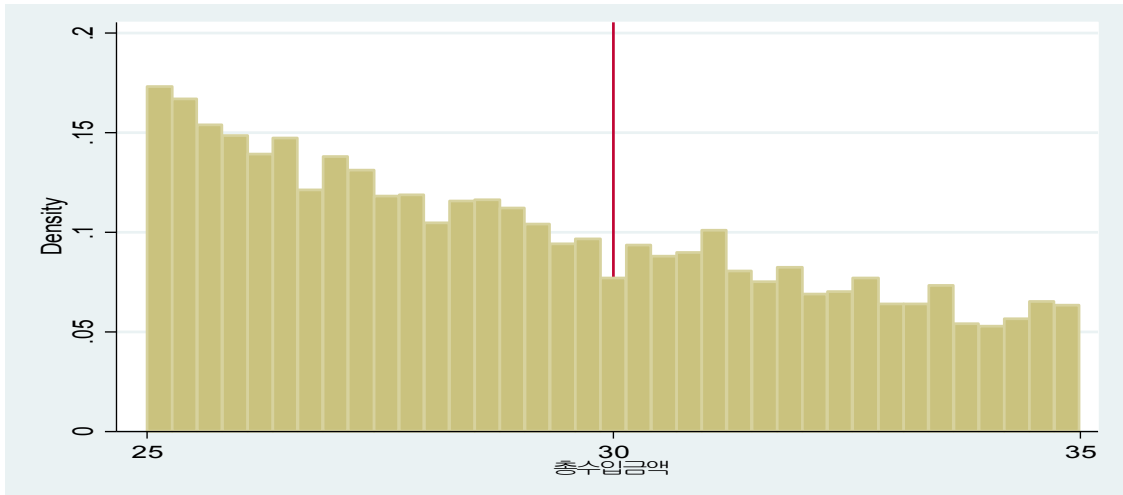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7]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2014~2017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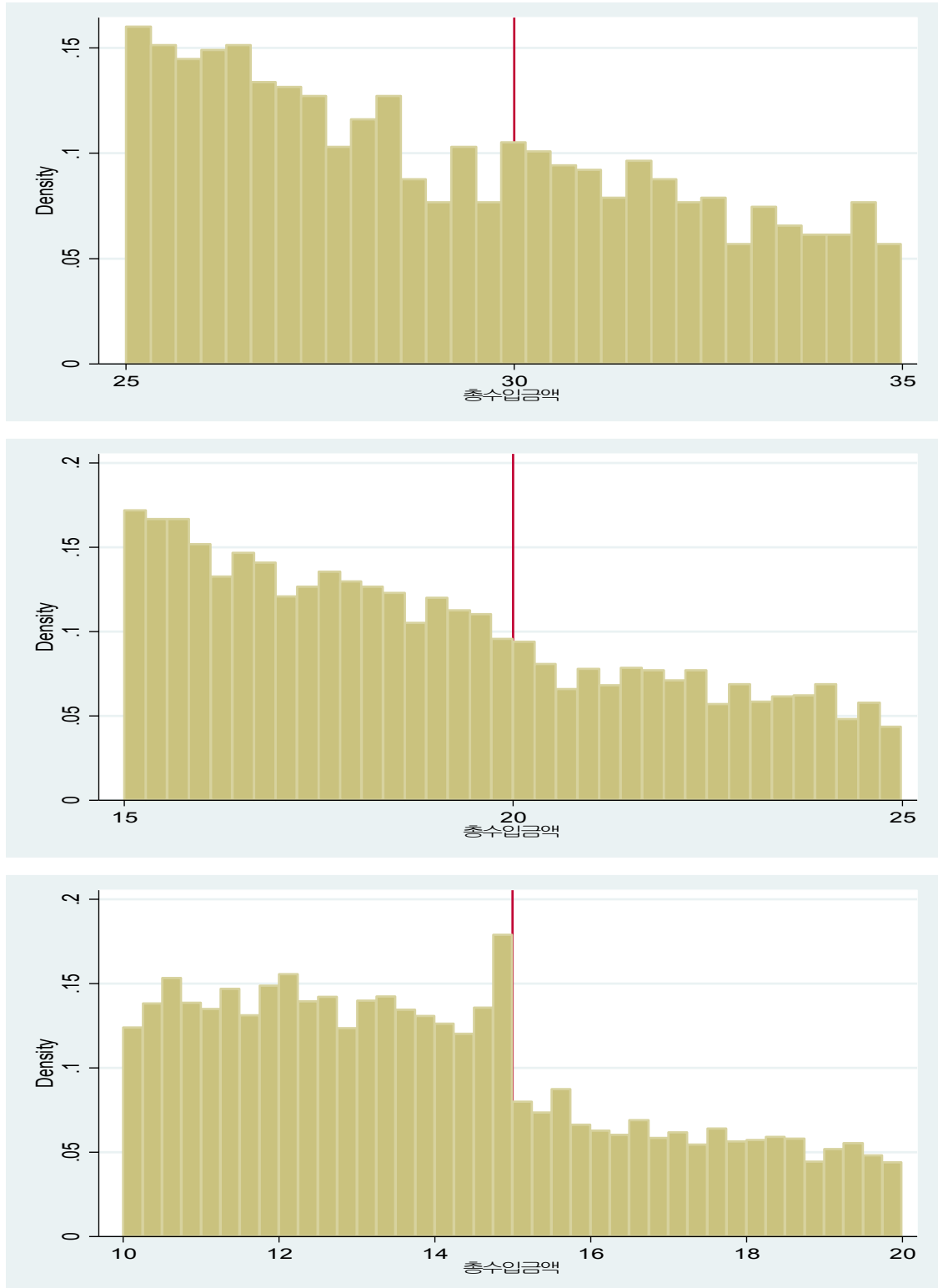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8]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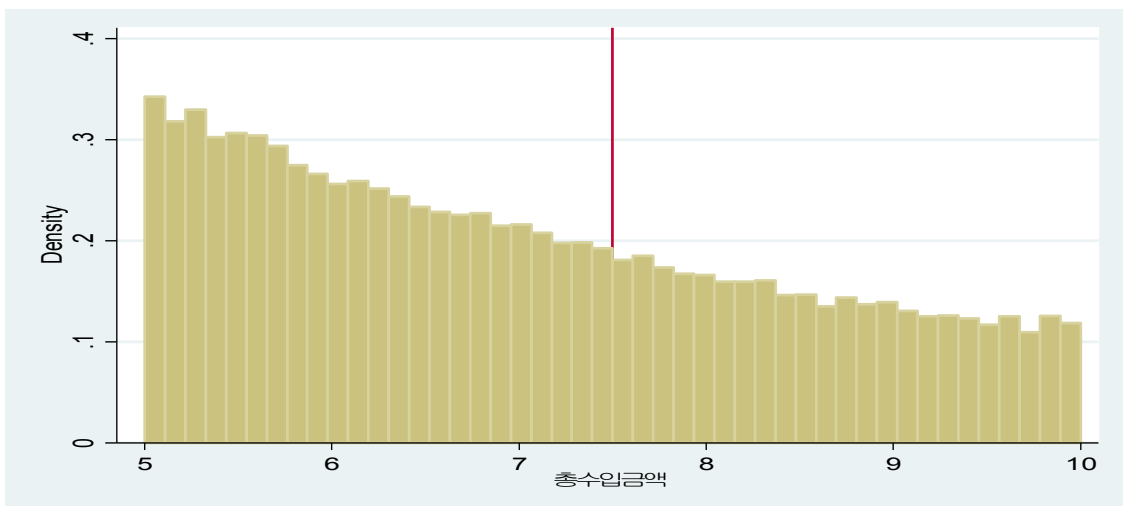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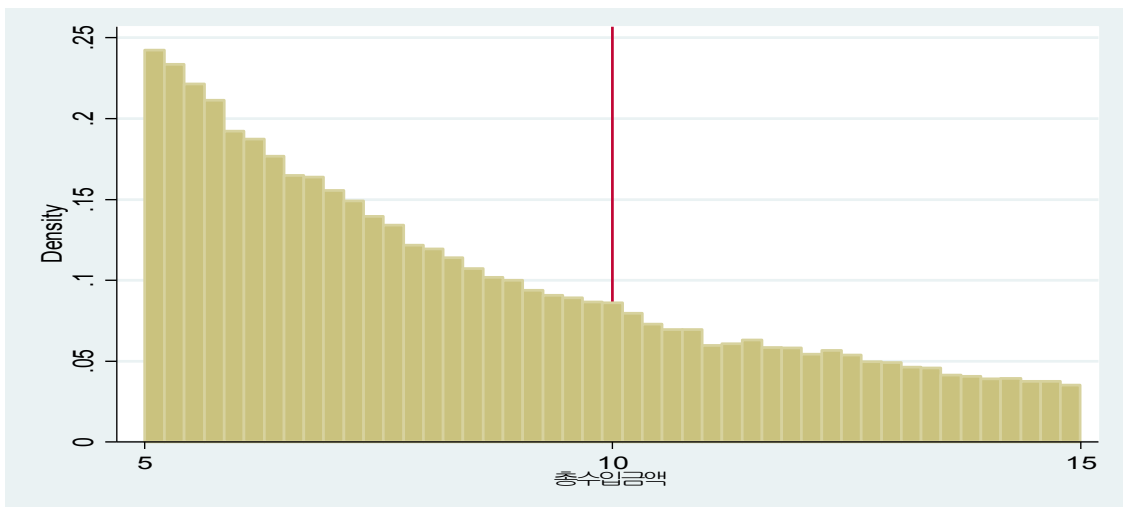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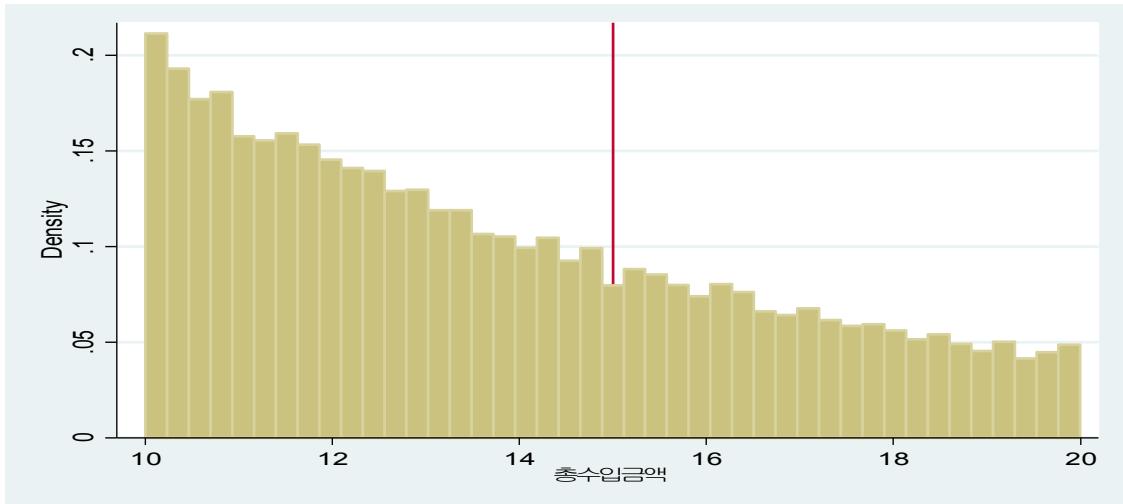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9]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제도 도입 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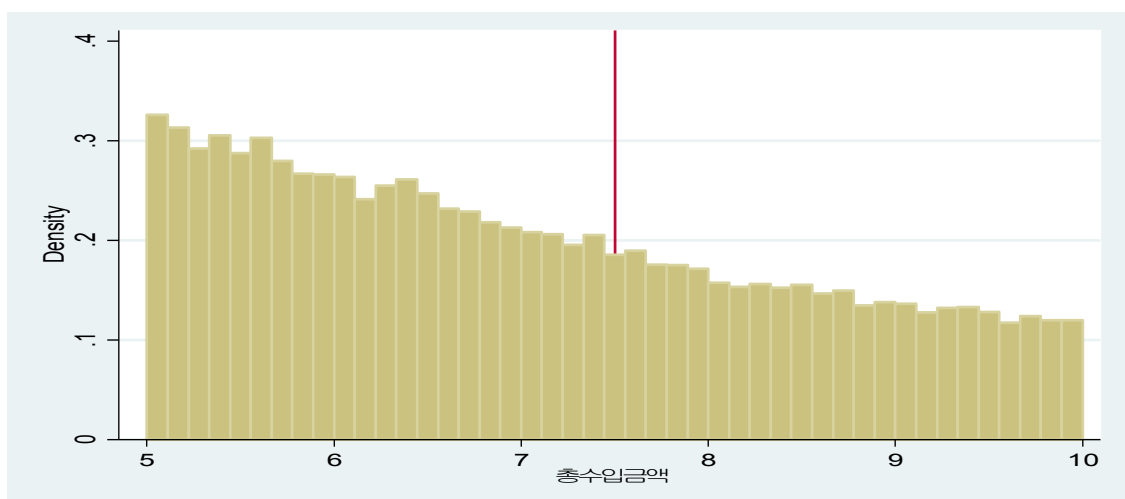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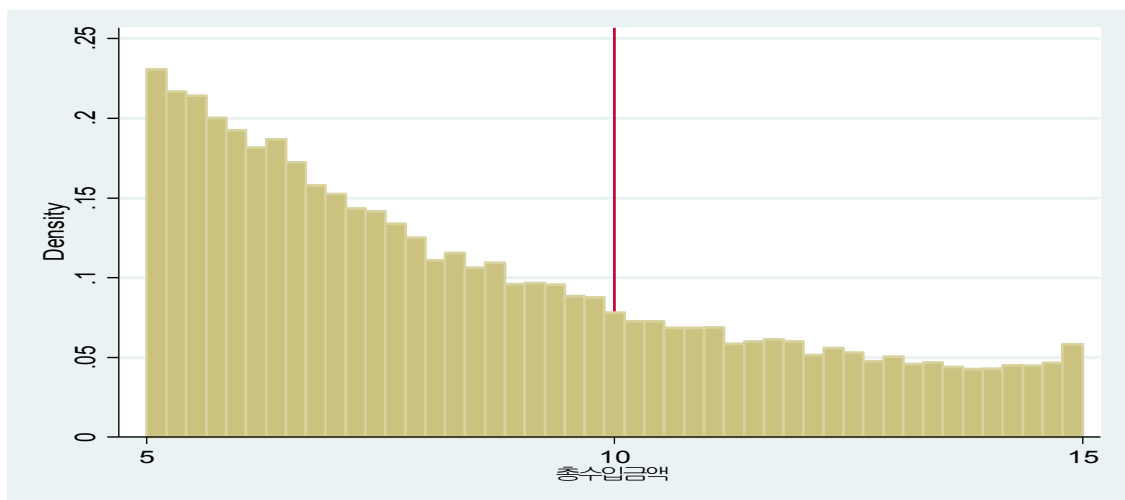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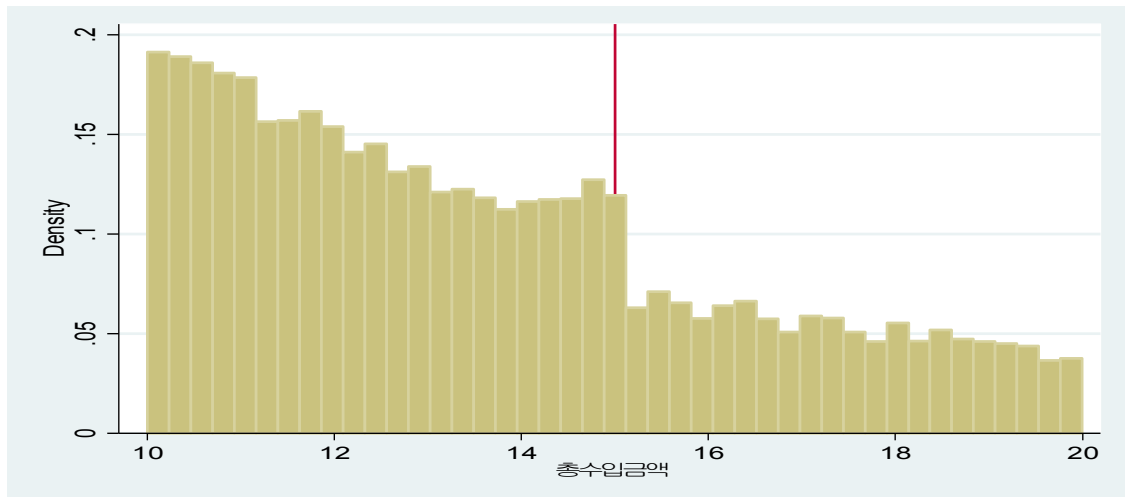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0]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2011~2013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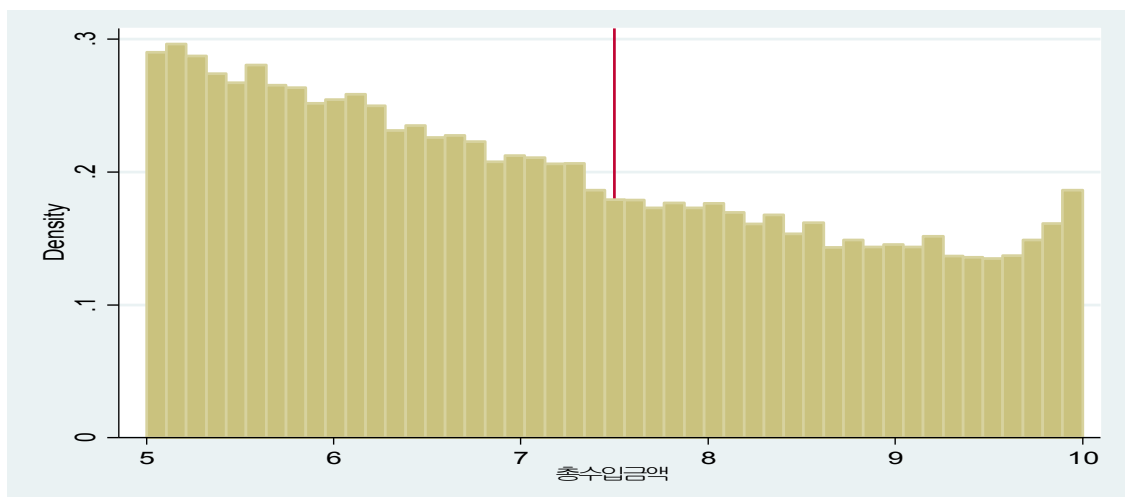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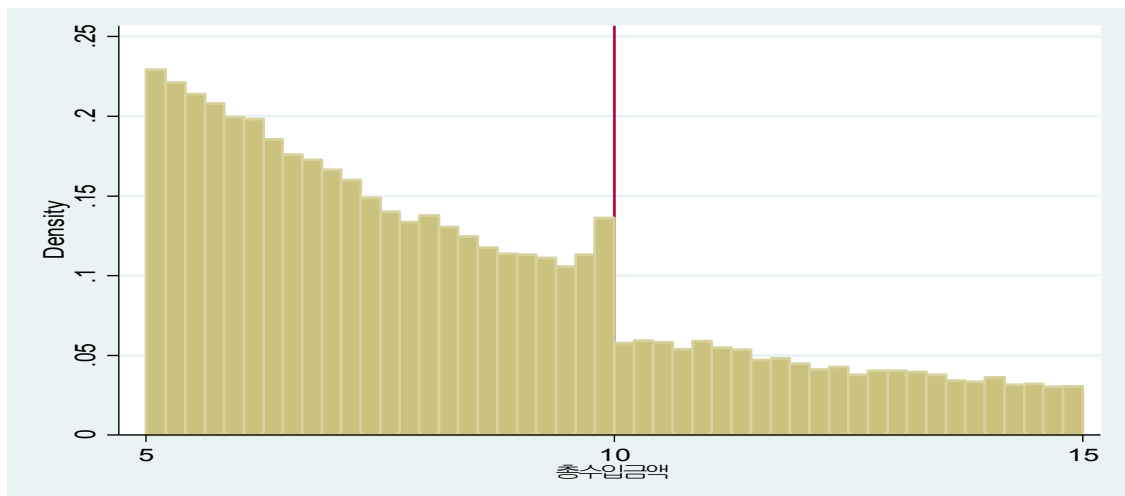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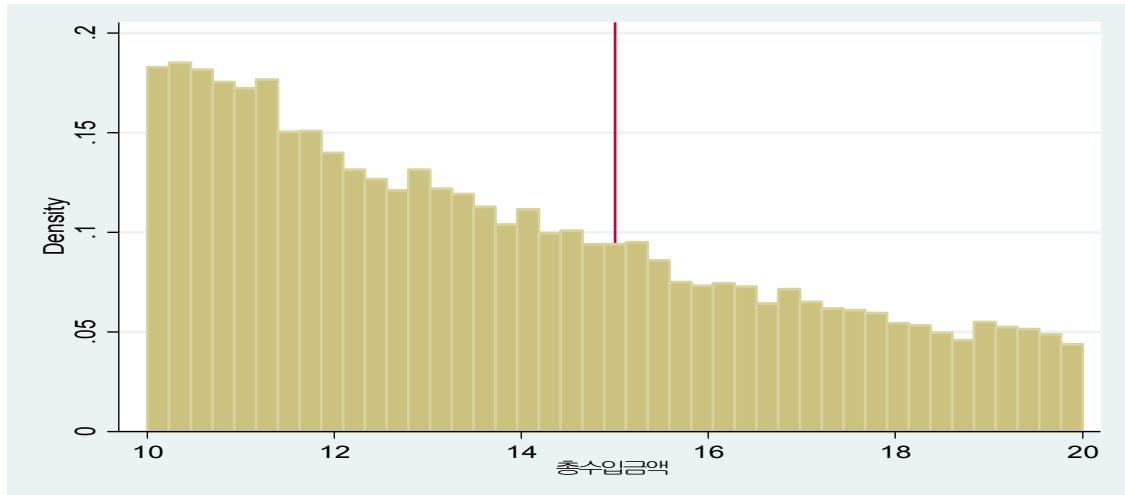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1]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2014~2017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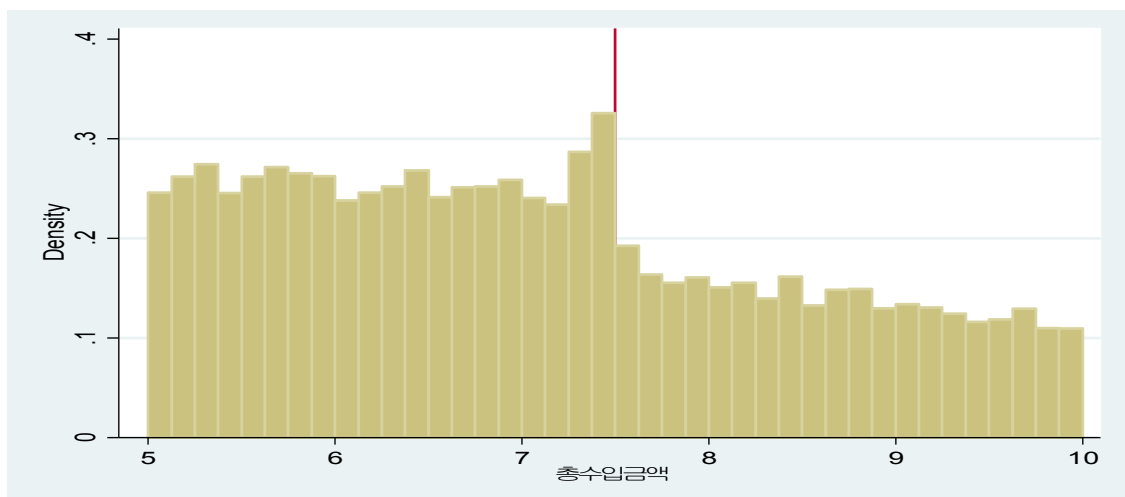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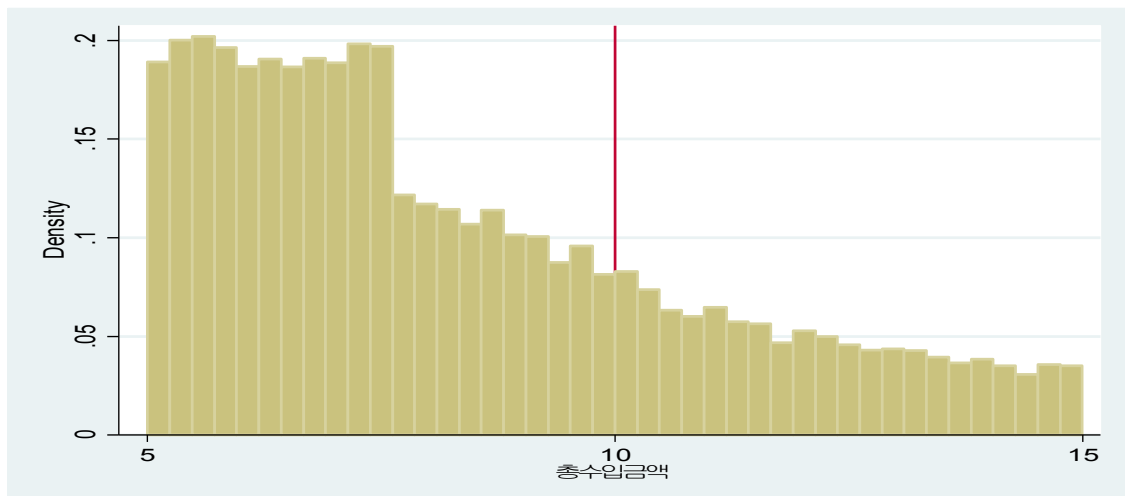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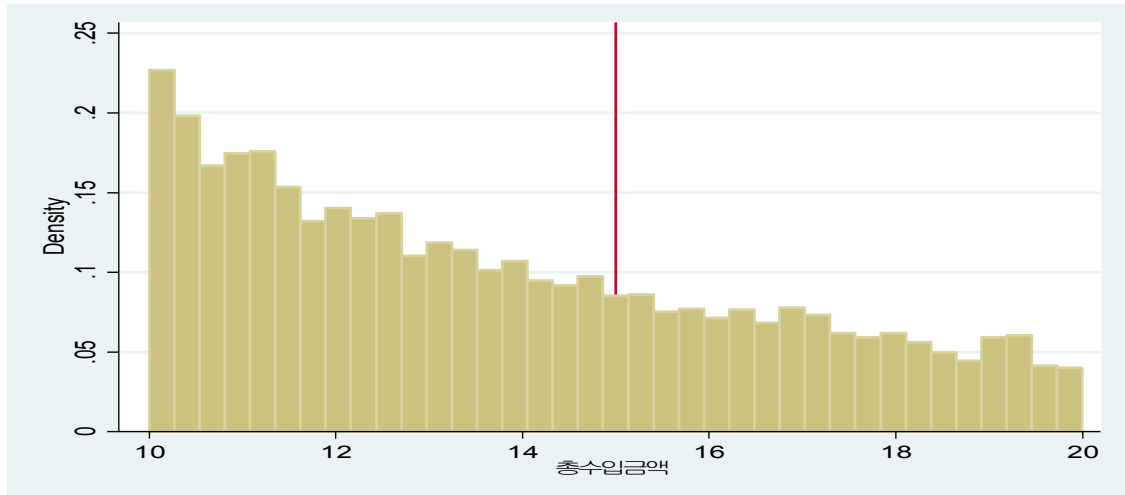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2]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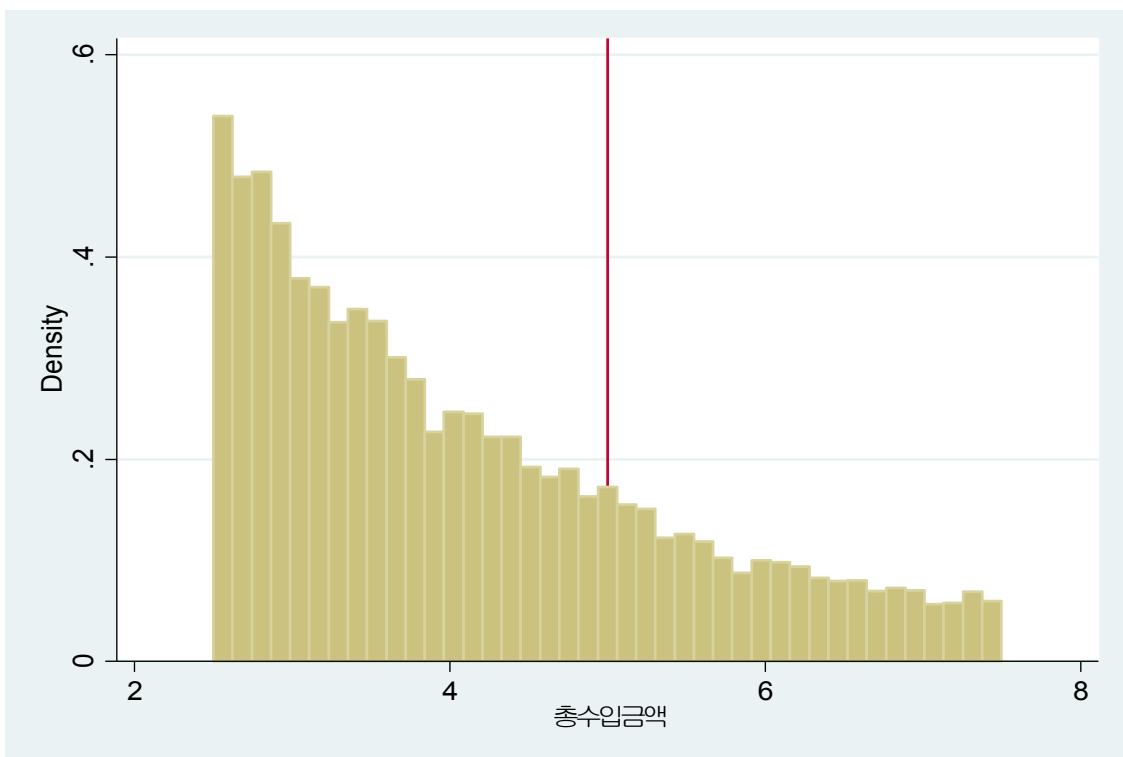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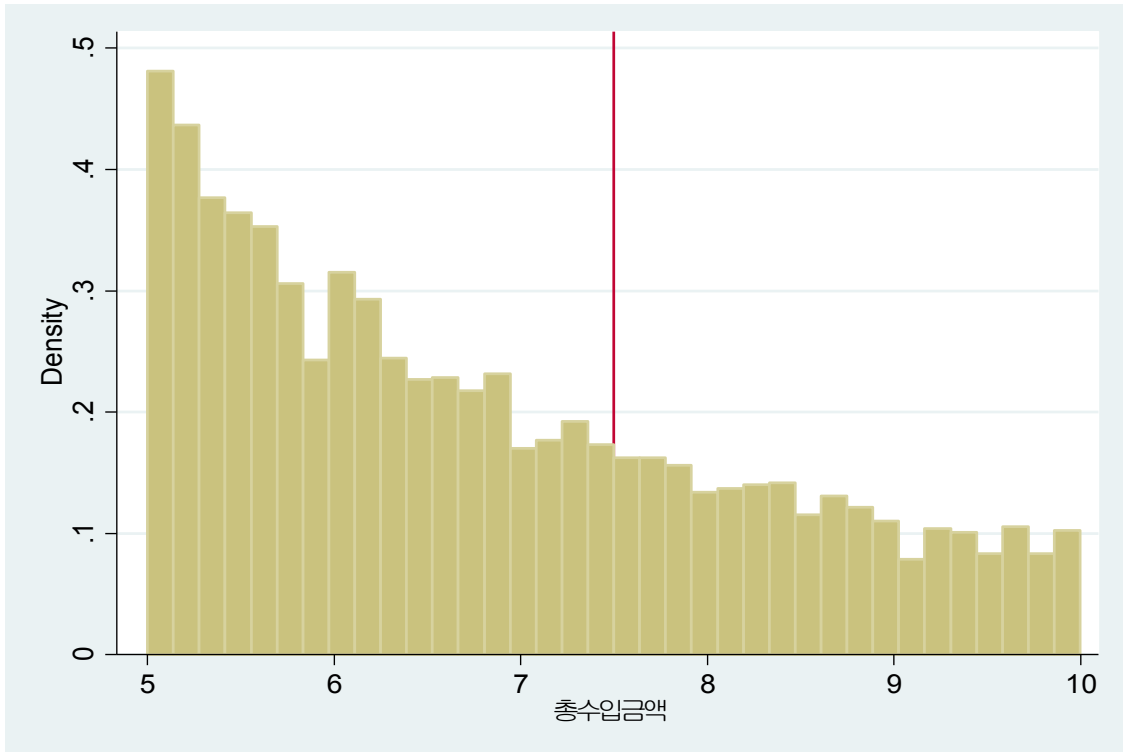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3]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제도 도입 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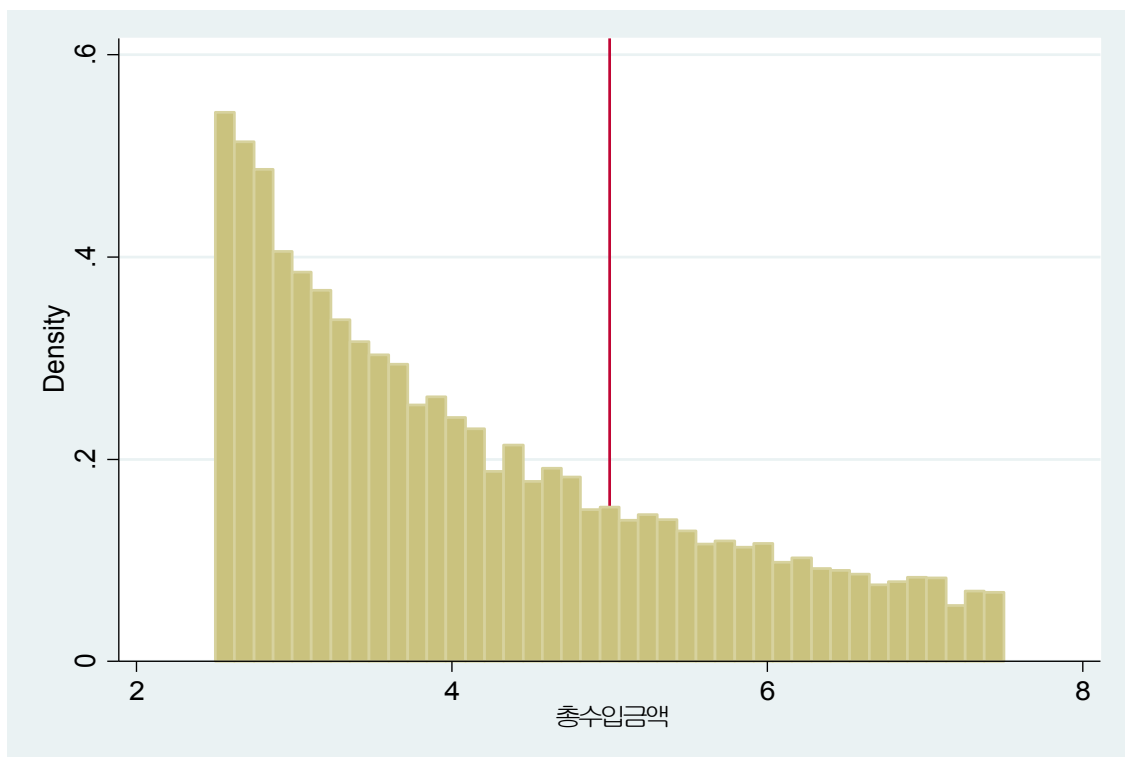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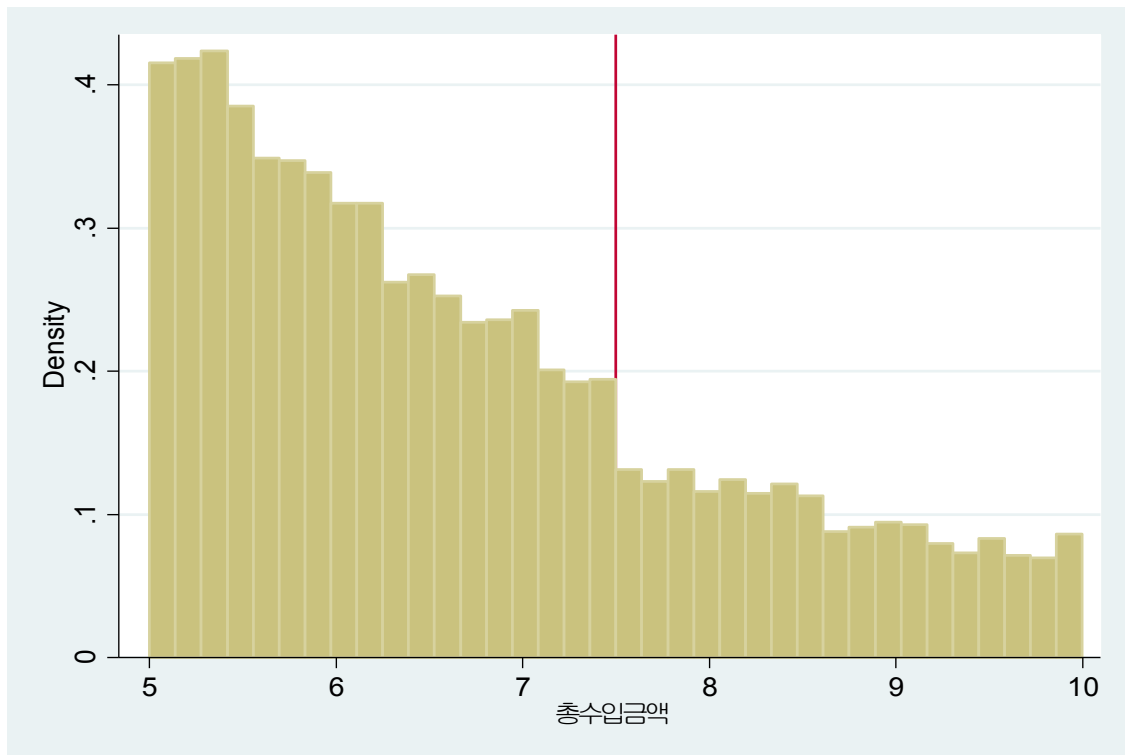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4]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2011~2013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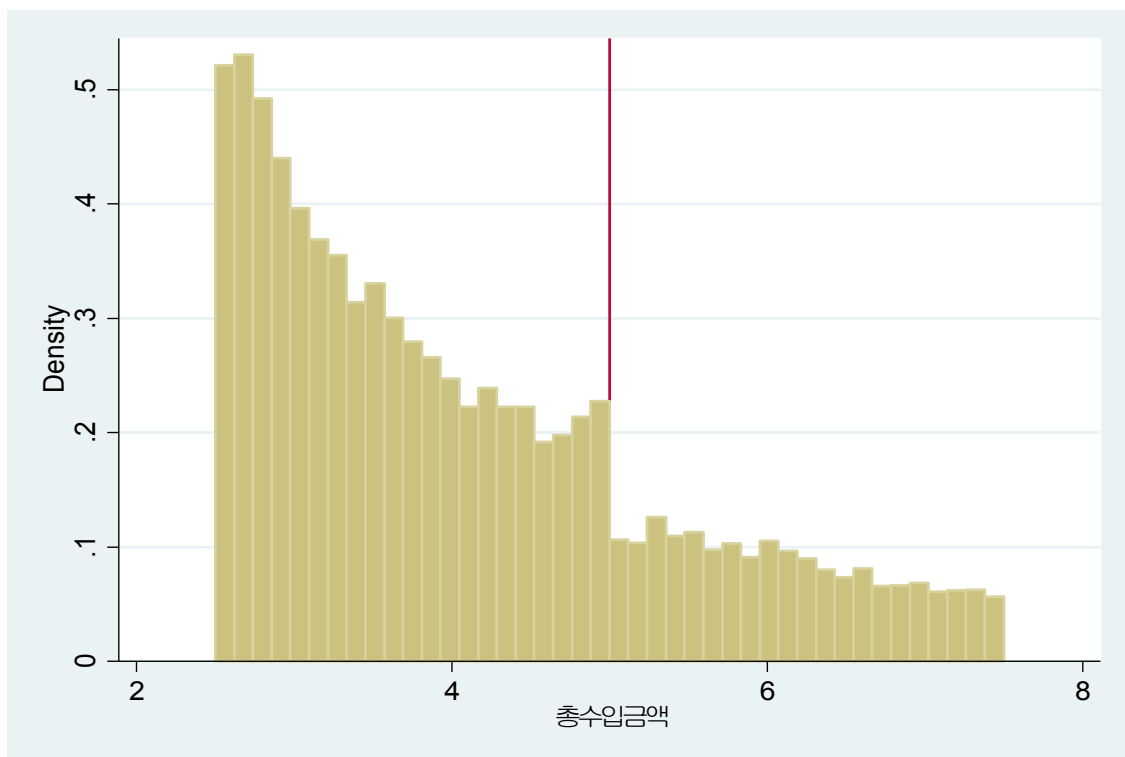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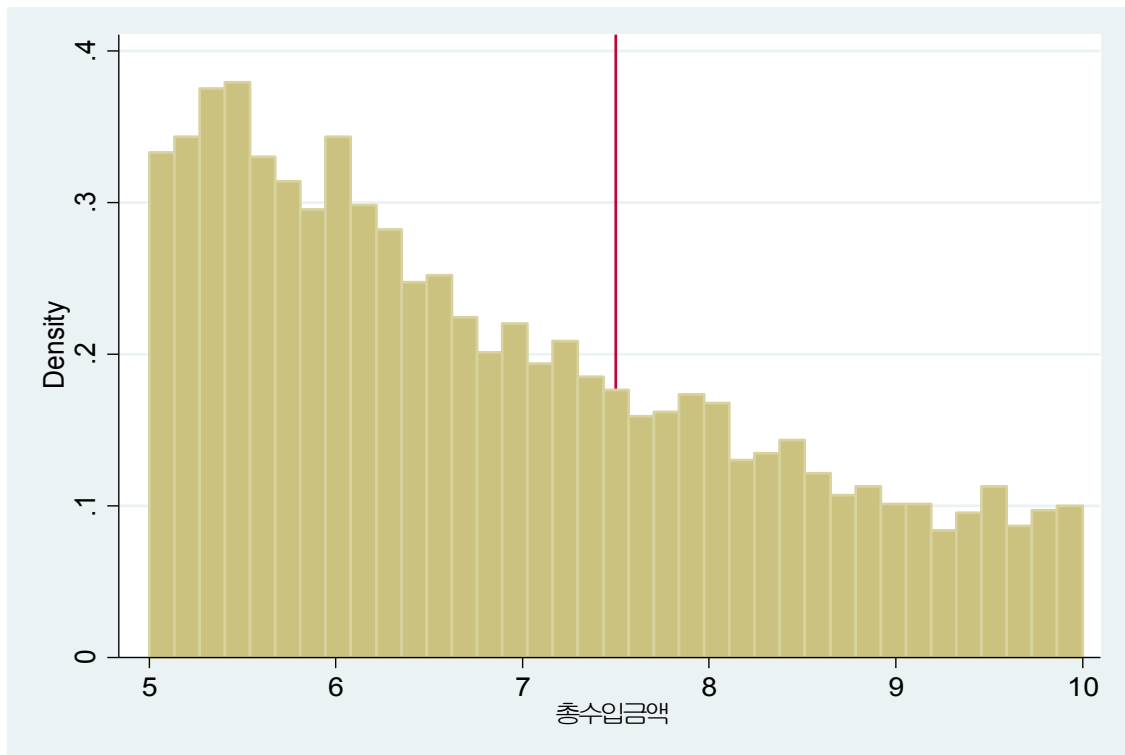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5]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2014~2017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